## 제364회국회 (정기회)

# 국회운영위원회회의록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

제 1 호

국회사무처

- 일 시 2018년11월27일(화)
- 장 소 국회운영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6. 국회법 개정에 관한 의견제출
- 7.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의견제출
- 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1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1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1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1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1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3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3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36.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7.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8.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9.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0.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1.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2.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3.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4.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5.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6.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7.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8.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9.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0.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1.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2.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3.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4.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5.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rc 시기키다취비 시비케키비로시/케스
- 56.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7.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58.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9.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0.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1.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2.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3.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4.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5.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6.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67.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68.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69.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70.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71.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72.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73.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7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7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7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7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78.	국외법	일무개성법률안
7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8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8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8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8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8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8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8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8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8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정된 안건

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	원	대표발의)	•5
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 의	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342)	•5
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	원	대표발의)	•5
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	원	대표발의)	•5
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	원	대표발의)	.5
6.	국회법	개정에 관한 의견제출(의정	}	의견제시) ·····	•5
7.	국회에	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밭	l률 개정에 관한 의견제출(의장 의견제시)······	.5
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	원	대표발의)	•5
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	원	대표발의)	•5
10.				대표발의)	
11.				대표발의)	
1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	원	대표발의)	• 5
1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	원	대표발의)(계속)	•5
1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	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360)	• 5
1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찬 의	원	대표발의)(계속)	•5
1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	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94)(계속)	•5
1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 의	원	대표발의)(계속)	•5
	국회법			대표발의)(계속)	
				대표발의)(계속)	
2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	원	대표발의)(계속)	•5
21.				대표발의)(계속)	
22.	국회법			대표발의)(계속)	
	국회법			대표발의)(계속)	
24.	국회법			대표발의)(계속)	
	국회법			대표발의)(계속)	
2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	원	대표발의)(계속)	•5
2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	원	대표발의)(계속)	•5
2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	원	대표발의)(계속)	• 6
	국회법			대표발의)(의안번호 9405)(계속)	
				대표발의)(계속)	
3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	원	대표발의)(계속)	.6

32.	국회법 일부기	H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계속)	6
			대표발의)	
34.	국회법 일부기	H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	6
35.	국회법 일부기	H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	6
36.			·   의원 대표발의)(계속) ····································	
37.			·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70)(계속) ······	
			E 의원 대표발의)(계속) ·····	
			· 우 의원 대표발의)(계속) ······	
			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666)(계속)	
			<sup>2</sup>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28)(계속) ·····	
			드 의원 대표발의)(계속)	
43.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l 의원 대표발의)(계속) ······	6
			·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616)(계속)···································	
			· - 의원 대표발의)(계속) ······	
			l 의원 대표발의)(계속) ·····	
			년 의원 대표발의)(계속)	
48.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두 의원 대표발의)(계속)	6
49.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면	l 의원 대표발의)(계속) ······	6
50.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리	· 의원 대표발의)(계속) ······	6
51.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도 의원 대표발의)(계속)	6
52.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드 의원 대표발의)(계속)	6
			H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262)(계속) ·····	
			· 의원 대표발의)(계속) ······	
			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603)(계속)	
56.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859)(계속) ······	6
57.			드 의원 대표발의)(계속)	
58.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호	기 의원 대표발의)(계속)	6
			· - 의원 대표발의)(계속) ····································	
			E 의원 대표발의)(계속) ·····	
			<sup>†</sup> 의원 대표발의)(계속) ······	
			<u> </u> 의원 대표발의)(계속) ······	
			<sup>†</sup> 의원 대표발의)(계속) ·····	
64.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 - 의원 대표발의)(계속) ····································	6
			· 의원 대표발의)(계속) ·····	
			<u> </u> 의원 대표발의) ·····	
			- 의원 대표발의)	
			] 의원 대표발의)	
			도 의원 대표발의)	
70.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203)	6
			· 의원 대표발의) ······	
			드 의원 대표발의)	
			· 영수 의원 대표발의) ·····	
			대표발의)	
75.	국회법 일부기	H정법률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	·····7

7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7
7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7
7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7
7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수	의원	대표발의)7
8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7
8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7
8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재성	의원	대표발의)7
8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7
8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7
8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7
8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7
8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7
8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7

(10시03분 개의)

○소위원장 서영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를 개 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우리 소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48건,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37건,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 정법률안 1건, 국회법 개정에 관한 의견제출 1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의견제출 1건 등 총 88건입니다.

안건 심사방식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88개의 안건을 종합해서 작성한 6개 의제별 소위 심사자 료가 있습니다. 그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각 각의 의제에 대해서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 하시고 난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또 논의 하신 후에 다음 의제로 넘어가는 방식으로 하겠 습니다.

- 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
- 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9342)
- 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
- 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
- 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
- 6. 국회법 개정에 관한 의견제출(의장 의견제시)
- 7.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의견제출**(의장 의견제시)
- 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
- 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
- 1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명길 의원 대표발의)
- **1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 1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회 의원 대표발의)
- 1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 (계속)
- 1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6360)
- 1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찬 의원 대표발의) (계속)
- 1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694)(계속)
- 1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 의원 대표발의) (계속)
- 1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 (계속)
- 1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
- 2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 (계속)
- 2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 (계속)
- 2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
- 2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 (계속)
- 2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유한홍 의원 대표발의) (계속)
- 2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 (계속)
- 2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 (계속)
- 2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 (계속)

- **2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 (계속)
- **2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9405)(계속)
- **3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 (계속)
- **3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 (계속)
- **3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 (계속)
- 3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
- 3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
- 3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
- **36.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 표발의)(계속)
- **37.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770)(계속)
- **38.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 발의)(계속)
- **39.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 의원 대표 발의)(계속)
- **40.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666*)(계속)
- **41.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728)(계속)
- **42.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 발의)(계속)
- **43.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 발의)(계속)
- **44.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4616)(계속)
- **45.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 발의)(계속)
- **46.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 발의)(계속)
- **47.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 발의)(계속)
- **48.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 발의)(계속)
- **49.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 발의)(계속)
- **50.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 발의)(계속)
- **51.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 발의)(계속)

- **52.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 발의)(계속)
- **53.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8262*)(계속)
- **54.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유민봉 의원 대표 발의)(계속)
- **55.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86*03)(계속)
- **56.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885*9)(계속)
- **57.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 발의)(계속)
- **58.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 발의)(계속)
- **59.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 의원 대표 발의)(계속)
- **60.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 의원 대표 발의)(계속)
- **61.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대표 발의)(계속)
- **62.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 발의)(계속)
- **63.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석 의원 대표 발의)(계속)
- **64.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 발의)(계속)
- **65.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 발의)(계속)
- **66.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 발의)
- **67.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 발의)
- **68.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 발의)
- **69.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 발의)
- **70.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16203)
- **71.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 발의)
- **72.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 발의)
- **73.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
- 7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

**7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

**7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

7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

7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

**7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수 의원 대표발의)

8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

8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

8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재성 의원 대표발의)

8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

**8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

**8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

8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

8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

8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

(10시05분)

○소위원장 서영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88항까지 총 88개의 안건을 일괄 상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회의장께서 우리 위원회에 의견제시한 국회법 개정에 관한 의견제출, 국회에서의 증 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의견제출 등과 관련하여 입법차장께서 참석하고 계십니다.

수석전문위원, 첫 번째 의제 소위원회 활성화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면 위원님들 또 들으시고 질의하시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 활성화 관련 심사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심사자료 5페이지를 먼저 설명드리고 1페 이지로 넘어가서 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소위원회 활성화 관련해 가지고 의 장님 의견제시가 있고요, 또 여러 의원님들께서 개정안을 제출하고 계십니다.

의장님 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회법 하고 증언 · 감정법 두 가지로 요약되는데 국회법 에서 상임위원회의 소관 사항을 분담하는 2개 이 상의 상설소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매주 1회 이상 개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자는 안이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정보위는 제외시켜 주는 걸로 안을 내셨고요.

상설소위원회에서는 법률안, 청원, 현안사항 그 리고 국정조사, 청문회 등을 상시적으로 개최해 서 이런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되겠습 니다. 또 예산안, 결산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소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 다.

또 소위원회와 소위원장의 권한을 강화해서 지 금은 소위원회에서 증인도 출석요구하고 또 정부 로부터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마는 그 명의는 위원장 명의로 나가도록 되어 있 습니다. 즉 위원장의 결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데 이를 결재 없이 소위원장 명의로 바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위원 회와 소위원장의 권한이 강화되는 측면이 있겠습 니다.

다음, 다른 개정안들에서는 주로 현재 있는 법 안심사소위를 임시회 중 1회 이상 개회 의무를 준다든지 또는 매월 두 번 이상 개회하도록 한다 든지 거의 다 정례적으로 수시로 많이 열도록 하 는 안들이 개정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1페이지로 넘어가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개관 표가 되겠습니다.

우선 소위원회 종류와 기능인데요. 종류에서 현행 국회법에서도 상설소위를 둘 수 있도록은 되어 있습니다. 상설소위를 임의규정으로 '둘 수 있다'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안건심사소위도 둘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고 청원소위를 별도로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장님 제시한 안에서는 2개 이상의 상설소위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의무화시키고 있고 또 상설소 위가 할 수 있는 일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 다, 법률안, 청원, 현안, 국정조사, 청문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안, 결산 등을 위해서는 별도의 소위원회 구성이 가능하도록 하 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상설소위를 두게 되 면 법안과 정책, 청원 등등에 대해서 종합적인 연계심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 또 의원발의 법률안이 계속 점증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신속하게 심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또 상임위원회 위원이라 하더라도 모두 법안소위의 위원이 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는데 상설소위 를 많이 설치하기 때문에 모든 위원들께서 상설 소위 위원이 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국회법에서 행정입법을 위원회에서 검토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너무 많기 때문에 잘 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러한 방대한 행정

입법도 수시로 상설소위에서 검토할 수 있는 그 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안에서는 상임위원회 중 정보위를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데 정보위 외에 운영위나 여가위같이 겸임 상임위원회는 여기에 들어오신 상임위원님들이 다른 일반 상임위를 하시면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설소위를 2개 이상 하는 것은 조금 제외하는 것이어떤가 하는 것은 논의해서 결정하실 필요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상설소위 업무권한에 국정감사나 행정 입법, 공청회 등등도 좀 나열적으로 해서 업무권 한을 좀 더 명확히 하는 점은 생각해 보실 필요 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상설소위가 되면 아무래도 인력과 예산 이 보다 많이 필요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지원근거를 명확하게 두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 이 됩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상설소위의 명칭 및 업무범위에 대한 것입니다.

현재는 현행 국회법에 따라서 상임위원회별로 보면 법안소위는 주로 제1법안소위, 제2법안소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든지 국토소위, 교통소위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상설소위가 맡은 분야가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좀 더 자세하게 명칭 을 결정하고 또 업무범위도 결정해 주도록 의장 님 안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의 조문 정비는 필요하다고 보았습 니다.

다음, 2페이지의 2번 사항입니다.

상설소위의 개회 빈도를 의장 안에서는 '매주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개회 빈도에 대해서는 여 러 개정안에서 임시회 중 1회 이상, 매달 1회 이 상 또 매월 2회 이상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것 도 개회 빈도를 어느 정도로 할지를 결정하실 필 요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의사일정 작성기준입니다.

현재는 위원회는 주로 월요일·화요일 오후 2 시에 하도록 기준을 정해 주고 있고 소위원회는 수요일 오전 10시에 하도록 또 본회의는 목요일 오후 2시에, 이것은 가이드라인으로서 주로 이때 함으로써 의원님들께서 어떤 요일이 되면 '오늘 은 소위원회가 있겠구나' 또는 목요일에는 '본회 의가 있겠구나'이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생각됩니다.

의장님 안에서는 매주 1회 개최하도록 했기 때문에 단지 수요일뿐만 아니라 목요일도 소위원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기 위해서 수요일 외에 목요일도 소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잡을 수 있는 날로 하도록 하는 안을제시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사항으로 소위원회 및 소위원 장 권한 강화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 재는 위원장 명의로만 할 수 있는 것을 앞으로는 소위원장 명의로도 바로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안이 되겠습니다.

동행명령이라든지 또 고발이라든지 이런 것도 현재는 위원회에서만 할 수 있는데 의장님 안에 따르면 소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소위원장 명의로 도 발부할 수 있게 하는 안으로서 소위원장의 권 한을 강화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는 혹시나 위원회와 소위원회가 어느 정도의 충 돌 가능성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할 것인지 소위원회에서 할 것인지 이런 점에 대해 서, 소위원회에서 자발적으로 너무 많이 하면 위 원회 차원의 활동이 조금 저해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소위원장 명의로 요구는 할 수 있도록 하 되 위원장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그런 방안도 논 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4페이지 4번 사항입니다.

의장님 안은 아닙니다만 소위원회에 계류되고 있는 안건들이 워낙 많이 있는데 소위원회에서 모두 심사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 다. 그래서 송옥주 의원님 안인데요. 소위원회가 위원회로부터 법안을 회부받으면 90일 이내에는 반드시 상정을 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라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법안이 너무 많을 때는 다 할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있고 또 의장님 안대로 그야말로 상설소위가 주 1회 개최되면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단정적으로 의무화시키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볼 여지는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시행일입니다. 상설소위를 의무화하고 정례화하는 안은 공포 후 3개월부터 시행하도록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서영교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받으

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사무처입법차장 한공식** 위원장님, 기존에 의장님 의견제시 관련해서 입법차장이 좀 설명을 드렸으면……

○소위원장 서영교 설명을 들어 볼까요? 그러면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회사무처입법차장 한공식** 입법차장입니다.

의장님께서 의견제시한 부분이 크게 두 가지입 니다. 상설소위 의무화하고 소위원회 활성화 부분 이 되겠습니다. 그 배경은 20대 국회 들어서 한 1 만 6000건 법률안이 제출돼 있는 상황인데요, 지 금 현재 기준으로 한 26%가 처리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원인을 찾아보면 소위원회에서 법안 심사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는 데에서 출발을 했고요. 여기 덧붙여서 의장님이 내년도에 운영위 에 예산을 반영해 주셨지만 소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한 7억 원 정도 예산 증액을 운영위에 시 켜서 지금 예결위에 넘어가 있는 상태고요. 국회 의 이런 법안 처리의 물꼬는 어떻든 소위원회를 통해서 해결이 돼야 된다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상설소위 부분도 의장님이 처음 제시한 게 아니고 여기 전문위원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13대 때 상설소위 의무화, 임의규정으로 들어와 있었고요. 15대 때 교섭단체가 3개, 4개 늘어나면 서 상임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더 활성화할 필요 가 있다 그래서 상설소위를 의무화한 적도 있습 니다.

그래서 의무화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상설소위 위원장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가 상당히 문제가 됐습니다. 그때 자유민주연합이 15대 때 생겨서 소위원장 배분 문제가 매끄럽게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의무화 부분이 제대로 실행이 못 됐고요. 그 이후에 그런 문제 때문에 임의규정으로 이렇 게 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 생각은 어떻든 상임위원회가 활 성화되려면 소위 부분이 지금 1개, 2개 정도 돼 있는 부분보다는, 부처 중심으로 돼 있지 않습니 까? 이 부분을 분야별로 좀 더 나눠서, 비록 위 원님들이 복수로 겸임하더라도 많이 나누어서 하 면 더 활성화가 된다는 기본적인 취지는 그렇습 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임위원회 수석들을 통해서 만약에 3개 이상 소위원회를 만들었을 경우 어떻 게 했으면 좋겠는지 안도 받은 게 있는데 그것은 참고로 저희들이 드릴 거고요. 그래서 기본적으 로는 지금 법안심사소위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고……

○**소위원장 서영교** 예, 알겠습니다.

○국회사무처입법차장 한공식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포함해서 논의 좀 해 주시면……

○소위원장 서영교 우선 소위를 상설화하거나 또 좀 더 다양하게 하자라고 하는 것은 항상 나 왔던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부분을 당 장 말씀으로는 3개로 한다 2개로 한다 이렇게 하 는 것보다는 어떻든 상설화 그리고 좀 더 다양화 이런 정도로는 법안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개정안이 나와 있는 것 같 으니까 그런 기준에서 구체적으로 뭐까지 다 간 다라는 내용까지는 갈 필요가 없을 것 같고,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 아니면 입법차장께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말씀 주십시오.

○정유섭 위원 정유섭 위원입니다.

제가 과문한 건지는 모르지만 지금도 각 상임 위원회에 예산소위 법안소위 청원소위 되어 있잖 아요? 그건 상설 소위원회가 아닌가요?

○**국회사무처입법차장 한공식** 그것은 상설소위 로 볼 수 없고요. 지금 국회법상 어떻든 특정 안 건 심사를 위해서 두는 소위원회로 보고요. 크게 보면 상설소위가 있는데, 지금 현재 국회법상 상 설소위 규정은 사문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 다.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상설소위는 소관 분야를 갖는 겁니다. 법안심사소위 같으면 분야가 어떻 든 법안에 초점이 있는 거고요. 예산결산은 예산 과 결산이란 그런 대상을 중심으로 하는 소위가 되고, 지금 하려는 상설소위는 아까 말씀드린 국 토교통위원회 같으면 국토 중에서 건축 분야 소 위원회, 항공 분야 소위원회, 도로 분야 소위원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소관이 있고, 소관에 대 해서는 법안이든 청원이든 정책 현안이든 이런 걸 모두 다룰 수 있는 그런 위원회를 두자는 것 입니다.

○**정유섭 위원** 상설 소위원회에서 법안 심사를 해도 법안소위에 가서 또 할 것 아니에요?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아니, 그때 법안소위는 없어지는 거지요.

○**곽상도 위원** 그러면 1개 상임위원회에서 몇 개의 상설소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일단 의장님 제시안에서 는 2개 이상으로 했는데, 3개에서 한 4개······

○곽상도 위원 국토교통위원회가 도로 따로 하고 뭐 따로 하고 뭐 이렇게 하면 소위를 몇 개를 만드는 거예요?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그것은 위원회에서 결정 하시기 나름입니다.

○곽상도 위원 그러면 지금 하는 거하고 차이가 뭐예요? 3개, 4개 만드는 것하고 개수에서 한두 개 늘어나는 것 말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영역이 도로면 도로 뭐 이런 식으로 만들 예정 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결국 이것도 도로와 관련 되는 법안 심사나 예산을 다 같이 여기서 한다는 거예요?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예산과 결산은 따로 심사할 수 있고요. 이것은 법안하고 그다음에 정책현안, 어떤 현안이 터지면, 만약에 BMW 화재가났다 이런 경우에 그런 것을 위원회에서 할 수도 있지만 상설소위에서 바로 청문회 같은 것도 할수 있는 그런 점이 있고……

또 청원도 지금은 청원심사소위가 따로 있는데 그것도 여기 상설소위에서 도로 분야의 청원이라 하면 여기에서 하고, 또 지금은 잘 하고 있지 못 하지만 행정입법 대통령령이나 이런 데 대한 통제도 상설소위가 주 1회 개최된다면 상시로 하니까 여기에서 바로 논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곽상도 위원** 지금 설명 들어 보면 차이를 느끼기 어려운 것 같은데?

- ○소위원장 서영교 입법차장님.
- ○**국회사무처입법차장 한공식** 기본적으로……
- ○소위원장 서영교 입법차장님, 잠깐만요.

수석전문위원이나 각 분야 상임위에 그분들에게 어떤 식으로 하면 좋겠는지 물어보셨다고 그 랬잖아요? 사실 이 법안의 기본 취지가 좀 더 소위를 자주 열어서 수시로 법안 심사도 하고 내용정리도 하자 뭐 이런 취지인 거지요?

○국회사무처입법차장 한공식 곽상도 위원님 말씀처럼 개수가 늘었다고 그래서 그게 활성화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걸 더 세분화함으로써 일단 적은 의원님들이 더 자주 만나고 그런기회는 많이 확보될 수 있지 않나 하는 기본적인전제하에서 개수 부분도 지금 최대한 많은 데가 2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더 쪼갤수 있으면 더 쪼개서 더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하자는 그런 의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서영교** 예, 말씀 주십시오.

○성일종 위원 이걸 이렇게 하면 예산이나 인력 이 얼마나 더 들어가요? 그거 추계해 보셨어요?

○국회사무처입법차장 한공식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요. 저희들은 출발이 이렇게 되면 현재 인원으로 하고 운영하면서 필요한 부분들은 보완을 해 나간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성일종 위원 그건 추상적인 얘기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했었을 때 각 상임위별로 예산이나 인력이 얼마나 더 증원되는지 계산해 보셨어요?

○국회사무처입법차장 한공식 저희들 생각은 만약에 소위 개수가 늘어나면 소위를 전담할 전문위원 한 명 더 추가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요. 어떻든 그런 예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지는 않았습니다.

○성일종 위원 우선 그런 것들이 안 되어 있으니까 준비가 덜 됐다고 보여지고, 두 번째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현재 이 시스템에 문제가 있나요? 이걸 했을 때 확연히 틀리거나 효율성이 높거나 아주 획기적인 변혁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예측하신 게 있나요?

○국회사무처입법차장 한공식 아까 수석전문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법안심사소위라는 게 법안만 다루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원도 별도로 되어 있는데 사실 청원도 어떻게 보면 넓은 의미의법안하고 비슷하게 다룰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아까 이야기했던 행정입법 부분이 진짜 중요한데그 부분을 상임위 차원에서 거의 터치를 못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설소위가 되면 그런 정부의 정책, 법률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성일종 위원 그러면 전체 상임위가 현안이 있었을 때 요구해 가지고 다 열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 말고 몇 사람이 그걸 다룬다고 그래서 그게 심도는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국회 협의를 해서 그런 걸, 예를 들면 무슨 현안이 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회의 열리기 전에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하자 이렇게 협의를 하면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요?

○국회사무처입법차장 한공식 지금 위원님 말씀 처럼 그런 부분도 열려 있는 거고요.

○성일종 위원 국회는 언제든지 그런 현안에 대해서 할 수 있잖아요?

○**국회사무처입법차장 한공식** 그렇지요.

○성일종 위원 그런데 그것을 굳이 이렇게 하면 서 인력 늘리고 예산 늘리고 또 이럴 필요가 있 는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제도를 우리가 운영 을 제대로 못 해서, 안 해서 문제지 새로운 제도 를 바꾼다고 그래서 더 좋아질 것 같지 않아요. 지금 있는 시스템 내에서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 다.

**○소위원장 서영교** 김종민 위원님 말씀 주세요. ○**김종민 위원** 저는 찬성 취지로 의견을 드릴게 요.

이것은 단순히 예산 문제를 넘어서서 기본적으 로 국회에 대한 불신, 국회의 생산성 문제와 직 결되거나 아니면 어떻게 보면 제일 본질적인 문 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국회라는 게 뭐냐? 300명 본회의가 국회냐, 아 니면 30여 명의 상임위원회가 국회냐. 아니면 개 별 의원이 국회냐, 원내대표가 국회냐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한번 해 보는 건데 본질적으로 우 리가 국회를 활성화한다고 그래서 상임위 활성화 얘기가 제일 많이 나왔잖아요.

결국 국회라는 게, 본회의라는 것은 최종 의결 을 통해서 국민에게 책임지는 기관이지만 국회의 숙의 기능을 담당하는 게 결국 상임위다. 그런데 지금 상임위가 한 20~30여 명이 모여서 의결하 는 기관으로 되어 있으니 실제로 그 정도의 규모 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일상적으로 해 나가기 어 려운 거고 공식적인, 간사 간의 합의된 의견들을 정리하는 것 말고는 대개 보면 국정감사 때 정부 한테 질의하는 거예요. 이게 국민들 보기에 호통 정도로 보여지는 .....

그래서 전체적으로 숙의 기능을 활성화하려면 적어도 한 7~8명 정도의 심도 있는 논의기구가 필요한데 그게 지금 성일종 위원님 말씀대로 필 요하면 의원들이 마음먹으면 할 수는 있지요. 그 런데 몇몇 의원들이 문제의식이 있다고 해도 결 국 법적인 권한이 없고 또 간사 간에 합의가 되 지 않으면 크게, 간담회고 하니까……

저는 이번 기회에 지금 법안소위나 예결소위나 이런 식으로 안건 중심으로 있던 것을 분야별로 나눠서, 그러니까 상설적으로 국회가 움직일 수 있는 단위를 소위 하면 저는 국회가 되게 민주화 될 것 같아요.

개별 의원들이 참여하거나 정부에 대해서 발언 할 수 있는 권한, 여기에는 법안도 있고 청원도

있고, 예결산은 분야별로 하기가 어려우니까 이 것은 그냥 별도가 필요하되 나머지 전체의 조사 업무, 심지어 국정조사나 감사 업무도 저는 소위 중심으로 운영이 되면서 최종적인 의결만 상임위 에서, 전체회의에서 하면 전체적으로 개별 의원 들의 권한이나 활동이 상당히 활발해질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국회가 민주화되거나 아니면 생산성 이 높아지는 계기가 될 수 있는데, 최종적으로 고민거리는 현재 있는 상임위원장, 그리고 상임 위 전체회의와 소위의 권한 배분 문제 이 문제를 정교하게 한번 짜거나 논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게 나중에 서로 간에 바킹(barking)이 생기거나 그러면 안 되니까 사전에 충분하게 소위와……

지금 미국도 동아태소위다 그러면 사실상 동아 태소위가 한국 문제에 대해서 뭔가의 의견을 발 언하게 되거든요. 거기서 결정하면 거의 미국의 회의 결정이 돼 버리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렇게 돼 버리면 몇 명의 동아태소위 관련자들 이 갖고 있는 기능들이 높아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외교위원회하고 어떻게 권한이 배 분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한번 봐서 여기에 대한 심층 검토안을 따로 검토해 보는 게 필요하 지 않겠느냐. 지금 원칙적으로 저는 동의하고 만 약에 이게 위원님들이 합의가 돼서 진도가 나간 다면 이 권한 배분 문제는 조금 더 심도 있는 논 의를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입니 다.

○소위원장 서영교 다음 박경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경미 위원** 국회의 생산성을 높이고 어떤 현 안에 대한 밀착된 논의 또 시의성 높은 그런 대 응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구체적인 적용 차원으로 내려가 보면 조 금 갸우뚱하게 되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저는 교육위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육위 가 법률 • 예산 • 청원 이렇게 나누지를 않고 유 • 초중등교육 그다음에 고등교육, 평생교육, 입시 사교육 이런 식으로 소위를 구성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법률 심사를 각각 이렇게 나눠서 해야 될 텐데 사립학교법이다 그러면 초중등교육부터 대학까지 이렇게 좍 걸쳐 있어서 어느 소위에서 해야 될지 가르마 타기가 좀 어려운 상황들도 많 이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예산은 조각조각 내서 할 수 없으니 예산소위는 또 따로 둬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현실적인 적용 문제로 가 보면 좀 어려움이 발생할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게 금을 긋기가 참 어려운 그런 사안들이 많아서요, 분야별로·주제별로 이렇게 상임위 소위들로 구분을 해 놓고 나면요.

○소위원장 서영교 곽상도 위원님 말씀 주십시 오.

○곽상도 위원 상설소위 2개 이상 설치를 의무화하려면 어느 위원회는 어떤어떤 부분을 이렇게나는다고 확실하게 안을 내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현재 있는 소위원회에 이런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줘 버리면 결국 또 문제가 해결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산결산은 그 시즌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것에 다른 활동을 거기서 더 할 수 있도록 이렇게만들어 주면 결국 이것 하려고 하는 이 취지도중간 과정으로 달성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우선 위원회를 어떻게 나눌 건지 그 생각이 결정돼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안 하니까…… 그러면 또 위원회에 가서 자기들이 알아서 다 결정하는 거예요?

○국회사무처입법차장 한공식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에 실무적인 차원에서 각 위원회의 수석전문위원들에게 만약 상설소위를 2개 이상했을 때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안을 받은 게 있습니다. 우선 이게 확정된 안이아니고 참고용으로 저희들이 드릴 테니까 한번보시고 이야기를 계속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곽상도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위원회에 국정조사를 한다든가 하는 이런 것을 주는 것, 그렇게만 줘도 지금 돌아가는 것보다 훨씬 달라지겠지요?

○**국회사무처입법차장 한공식** 예, 그렇습니다.

○**곽상도 위원** 그렇게 해도 무방한 것을 왜 이렇게 어렵게 지금 가려고 하지요?

○김종민 위원 지금은 법안소위잖아요. 이게.

○곽상도 위원 아니, 예산결산소위에다 그것 만들면 거기에다 국정조사하는 권한을 준다든지 지금 하려고 하는 것, 청문회 할 수 있는 것을 업무범위 안에 늘려 주든지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예산결산소위는 예산결 산을 하도록 하는 특정 안건 소위이기 때문에…… ○**곽상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풀어 버 리면 되지 않느냐는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것은 바로 상설소위를 하자는 이야기랑 같 은 이야기가 됩니다.

○김종민 위원 같은 얘기예요.

○곽상도 위원 아니, 지금 현재 위원회가 임의 위원회로 있다고 하더라도 임의 위원회 거기에 권한을 조금 더 주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 기지요.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분야를 임의로 만들어서 하게 되면, 그게 의무화하느냐 임의화로 두느냐 그 차이만……

○**유의동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이 안을 내신 것에 대한 고민의 방향이 어디 있는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법안의 품질이 라든지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겠다는 취지에서는 충분히 타당한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방향성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우리가 먼저 좀 고민해 봐야 될 것이지금 전체회의 중심이냐 또 상임위 중심이냐, 소위 중심으로 갈 것이냐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이설정돼야 되는데 지금 현 체제는 상임위 중심 체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상임위에서 의사결정이 되면 본회의에서는 별다른 특별한 사항이 있지 않는 한 그냥 상임위 의견을 존중해서 모든 것들이 처리됐는데 그것이 소위 중심 단으로 내려온다고 하면 물론 세밀하고 디테일하게 보는부분도 있겠지만 결국에 그것은 몇몇, 그러니까예를 들어서 소위가 일곱 분으로 구성이 된다고하면 일곱 분을 제외한 이백구십세 분의 의원님들은 이 논의로부터 근본적으로 배제될 수 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어떻게 이 문제들을 풀어낼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그러니까 상임위 중심으로 갈 거냐 본회의 중심으로 갈 거냐 본회의 중심으로 갈 거냐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겠다, 그것에 대한 동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내놓는 것은 많은 논쟁만 있을 뿐이고 시간적 소요만 있을 뿐이다.

오히려 애시당초 고민이 법안 품질을 높이고 정책적인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거라면 현재 있 는 제도를 운영하되, 현재 제도하에서 법안소위 를 정례화한다든지, 예를 들면 일주일에 1회씩, 하루 종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집중도를 떨어 뜨리니까 4시간, 오전·오후 이렇게 나눠 가지고 이것을 정례화하면서 지금 적체돼 있는 법안 문 제나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방식이 옳지 20대 국 회 하반기에 와서 무리하게 이것을 소위원회 체 제로 옮기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예기치 못한 부 작용으로 인해서 우리가 원래 기대했던 입법 취 지를 살리지 못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 니다.

○소위원장 서영교 유의동 위원님 감사합니다. 신동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신동근 위원 아마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는 그 런 취지는 다 동감하는 것 같고요. 다만 이게 현 실로 갔을 때 의견들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예컨대 보건복지 같으면 만약에 보건의료소위 사회복지소위 식약소위 이렇게 3개로 분화를 시 킨다면 그런 분야별로 집중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아까 유의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도 사실 법안소위나 예결산소위에서 다뤄도 전체 상임위에서 다시 또 다루게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대부분 소위에서 통과되면 전체위원회에 서는 대부분 그냥 통과되는 경우가 많지요, 거기 다 위임을 하니까.

이렇게 돼도 마찬가지로 운영될 거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것보다는 문제가 법안을 더 생산적 으로 빨리하자고 할 것 같으면, 그 취지라면 법 안소위를 오히려 2개 아니면 3개로 더 많이 만드 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자주 하게 되고. 그런 효 과가 있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나왔을 때는, 그 법안소위만이 아니고 여기서 청원도 하고 정책도 하고 청문도 하자는 얘기는 이 자체에 뭔가 다른 의미를 부여 하는 것 같아요, 아까 김종민 위원이 얘기한 것 처럼 미국의 아태소위처럼. 이게 그런 건지 이 취지는 대충 알겠는데 명확하게 어떤 것을 지향 하는지가 약간 성격이 좀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듭 니다.

○소위원장 서영교 우선 이 법안 관련해서 수석 전문위원과 입법차장님의 말씀도 들었고 또 위원 님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 내용이 새롭게 시작을 해서 아주 복잡한 것 같기도 하지만 사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국회의장 님이 내신 안이나 국회의원들이 내신 안 중에는 소위원회를 현재 있는 것보다 조금 다양화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인 거지요, 한 가지는. 그래서 다 양화한다.

간단히 보면 저희가 오늘 만약에 이 부분에 대

해서 깊이 들어가게 된다면 소위원회를 다양화한 다라고 하는 한 가지. 그런데 이것을 각 상임위 에서 다양화하기 어려우면 또 그 상황에 맞춰서 하면 되는 거고, 좀 복잡한 곳은 다양화하고 그 렇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법안 심사나 이런 것들이 자주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좀 정례화해서 자주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데 정례화했는데 정례화를 안 지킨다고 해서 뭐가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 래서 월 2회 정도 정례화한다라고 하면 그것이 우리를 스스로 더 많이 움직이게 하는 것이지 이 것이 우리에게 일정한 벌칙이 있거나 이런 것이 아니면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면, 주로 법안소위 같은 경우에는 소위가 1년에 보통 몇 번 정도 이루어 진다고 볼 수 있을까요? 보건복지위 같은 경우에 아주 자주 해서 얼마 전 본회의에서 한 40개 정 도의 법안을 통과시켰지요, 며칠 전 본회의. 그리 고 또 교육위는 사실은 새롭게 분리돼 가지고 법 안소위를 거의, 이번에 한 두 번 정도 한 것 같 습니다. 많이 못 하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잠자고 있는 법안이 많아서 법안 심사도 좀 더 자주 할 수 있게 정례화하면 우리가 법안 심사를 많이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여기에 녹아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의견이 모아진다고 한다면 간단 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 으로 한 번 더 위원님들이 좀 검토해 주시고. 지 금 당장 상황으로는 의견이 딱 모아지기는 어려 울 것 같아요.

#### ○김종민 위원 간단하게 추가 의견……

지금 이게 약간은 좀 복잡한 논의로 되고 있는 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은 이게 기존에 있는 법안소위, 청원소위, 예결산소위에서, 예결산소위 는 어차피 개별적으로 분야별로 할 수가 없으니 까 이것은 빼고 나머지 법안과 청원이라고 하는 특정 임무만 부여하던 소위에다가 사실은 국정조 사권을 더 추가해서 정부 부처의 어떤 특정 부서 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법안과 국정 감시 업무를 소위로 권한을 주는 거거든요.

지금 이 조사권이 상임위에 있잖아요. 본회의 와 상임위에 있으니까 중대 사항 아니면 거의 잘 가동이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국정감사 때나 한마디 질의하고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국회가 별 권한이 없어요. 그런데 소위에

이 국정조사권이 부여가 되면, 일상적으로 정책질의와 현안질의 그리고 여기에 대한 조사 업무를 수행한다면 우리 국회의 운영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국회의원 개인 개인이 각해당 부처에 대한 감시권이 확 높아지는 거라고봐요, 저는. 지금까지는 법안 의결권만 있었는데일상적인 정책 업무에 대한 발언권이 상당히 세지는 거예요. 저는 국회의 권한을 실질화시키는,지금까지는 상임위원장이나 원내대표에게 위임돼있던 국회 권한을 국회의원 개인이 활용하게 하는 면에서 상당히 획기적인 안이다. 이 내용적인어떤 획기성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보고.

그다음에 이 내용의 변화와 아울러서 지금 주 1회 하자는 것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기의 문제. 지금 이것을 상설화시킨다는 것은 크게 이 내용 이 권한을 강화시킨다는 것과 자주 열자는 건데, 자주 여는 것도 저는 주 1회는 좀 무리라고 보는 데 월 2회 정도로 규정을 해서 실제로 상설위원 회에서 법안 심사를 상설화 안 하면 지금 이 국 회에 대한 불신을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저는 이 법안이 되게 중요한 법안이라고 생각하 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이 정도만, 아직 합의는 쉽지는 않다고 보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논의를 좀 해서…… 이 작 은 법 하나가 사실 앞으로 국회 전체를 바꿀 수 도 있는 법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약간은 관심을 가지고 심도 있는 논의를 좀 해 줬으면 하는 그 런 의견입니다.

#### ○**소위원장 서영교**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우선 한 가지는 모두 다 법안 심사든 소위가 좀 상설화돼서 정례화해서 자주 굴러갈 수 있으 면 좋겠다 이 의견에는 사실은 다 동의가 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으로 한 가지를 좀 좁힐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지금 있는, 저 같은 경우에 교육위원회인데 여기를 보니까 교육위원회가 초중등교육소위, 고등교육소위 나눈다면 이렇게 나눌 수있습니다라고 예를 들어 왔는데, 위원들이 너도나도 법안소위를 사실은 가고 싶은데 법안소위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법안소위처럼 초중등소위와 고등교육소위로 두고, 그러면 모든 위원들이 소위는 다 들어가고그리고 예결산소위는 따로 만들어서 이렇게 할수도 있을 것 같아서 우선 다른 권한 배분 뭐 이

런 것보다 각 상임위원회에 있는 위원들이 각 소위에 다 배치되는 부분이 생기는 것, 그래서 거기서 또한 그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그다음에 또 잡아갈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이야기를 만약에 한다면 이렇게 해서 소위를 나눈다고 하는 것 한 가지, 그다음에 정례화한다고 하는 것한 가지, 이 정도가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는가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말씀처럼 거기에 내용으로는 청문회권 이런 것까지 같이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도 또한 논의할 수 있는 것 같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의견을 좁힐 수 있으면 좁히고 그렇지 않으면, 의견을 좁히기 어 렵다면 저희가 이것은 의견을 조금 더 상의하시 고 나서 다시 심사하는 이런 식으로 할까요?

####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어느 쪽에 치우치고…… 제가 보기에 청문회권 주면 여당에 불리한데……

○**김종민 위원** 이게 여당에게 불리한 법인데 여당에서 하자고 주장을 하네. 큰일 났네.

○소위원장 서영교 의장님이 하자고 하는 것…… ○정유섭 위원 아니, 조금 더 생각해 보자는 거 지요.

○소위원장 서영교 예, 제가 보기에는 '안 된다' 이것보다는 지금 서로 생소하니까, 생소한 것보 다는 다 이해하고 있으면서도 구체적으로 들어가 면서 조금 고민을 더 하자는 것이니까 오후에 다 시 한번 고민을 하시거나 그다음 시간에 고민하 실 수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정도로 내용을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좀 좁혀 주셨 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두 번째 의제입니다. 법사 이 부분은 지난번 여야 원내대표 간에 합의도 이루어 졌고 이런 내용들인데 법사위 체계·자구심사제도 개편에 대해서 두 번째 의제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사 위 체계·자구심사제도 개편 관련 심사자료를 보 아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법사위 제도에 대해서 현행 제도를 약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법사위가 상임위에서 결정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체계와 자구 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 이 법사위가 다소의 월권행위를 하고 있다 이 런 비판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선진화법 할 때 이유 없이 회부된 날부터 120일 이내, 약 넉 달 이내까지 체계 · 자구심사를 마치지 않은 경우에 는 소관 위원회—당해 일반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일반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 여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법률안의 본 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고 또는 간사와 협의해 서 이의가 있는 경우, 즉 당별로 이의가 있는 경 우에는 해당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의 찬성으로 의장에게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의장에게 부의가 요구 되면 의장님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서 바로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당별로 교섭단체 간 합의가 되지 않으면 본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일반 의결정족수로 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 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법사위가 이렇게 체계·자구심사를 지연시키고 있는 경우에 국회의장께서 심사기간 을 지정해서 그 기간 종료 시에는 본회의에 직접 부의할 수 있는, 그런데 요건이 있습니다. 각 교 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가 있는 경우 등으로 요 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바로 본회의에 직접 부의 할 수 있는 현행 제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개선하자는 의견들이 들어와 있 습니다. 폐지와 개선과 국민에 의한 본회의 부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폐지 의견의 개정안들은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제도를 아예 폐지하고 당해 상임위원회에서 체계 · 자구심사까지 다 마치는 것으로 이렇게 하 는 안이 있고, 그다음 안은 법사위의 이 제도를 폐지하면서 지금 현재 국회에 법제실이 있습니다 마는 이를 국회법제지원처로 확대 개편하는 게 되겠습니다. 국회법제지원처를 신설해서 여기에 서 체계·자구심사를 하도록 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개선하는 안으로는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기한이 현재 아까 설명드린 대로 120일, 넉 달인데 이를 60일 또는 90일로 단축시키자는 것 입니다.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해당 상임위원회 에서 법사위가 두 달 동안 또는 석 달 동안 하지 않으면 바로 본회의에 부의 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개선하자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좀 선언적인 규정입니다마는 '체계·자구 심사 외에 법사위는 법률안의 본질적 심사는 할 수 없다'이렇게 심사 금지를 국회법에 명문화시 키는 그런 내용도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 황주홍 의원님이 내신 안에서는 이렇게 본 질적 내용 심사 금지 명문화와 더불어서 이 기한 을 30일로 하고, 그러고는 바로 그 해당 위원회에 서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한다든지 등등을 거치지 않고 30일 기한이 지나면 바로 본회의에 넘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국민에 의한 부의는 100만 명 이상의 국민 연서가 있으면 바로 120일, 넉 달이 지나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런 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서영교 현행안이 있고 개정안이 나 와 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말씀 주십시오. 의견 있으면 말씀 주십시오.

- ○정유섭 위원 한 말씀……
- ○**소위원장 서영교** 정유섭 위원님.
- ○정유섭 위원 이게 이번 국회 하면서 여야 대 표들 간에 무슨 논의가 좀 있었던 사항 아니에 요?
-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맞습니다. 원내대표님들 협상에서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하실 때 '국 회운영위원회 산하에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를— 지금 소위원회가 되겠습니다-구성해서 법사위 등의 효율적인 상임위원회 활동에 관한 제도개선 과 특활비 제도개선을 협의 추진한다' 이렇게 하 셨습니다.
- ○정유섭 위원 합의했는데 그러면 여야 대표 간 에 어떤 식으로 개선한다는 구체적인……
-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 고....
- ○정유섭 위원 그것은 그냥 운영위에 넘긴 거예 요?
-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그렇습니다.
- ○정유섭 위원 아니면 여야 대표가 따로 또 할 겁니까?
-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일단은 여기 국회운영위 원회에 넘겨져 있는 상황입니다.
- ○정유섭 위원 우리가 해 보고 합의가 안 되면 또 따로 만나서 하시려나?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소위원장 서영교 그때 원내대표 간의 합의에 서……

○정유섭 위원 개선해 보자.

○소위원장 서영교 수석전문위원님, 혹시 '법사 위의 자구·체계 심사 부분은 제외한다'이렇게 합의되지는 않았습니까? 김성태 대표님도……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일단 명문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김종민 위원 개선한다.

○유의동 위원 당시의 논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게 몇 대 국회, 몇 대 국회의 문제를 떠나서 지속적으로 법사위와의 갈등, 타 상임위원회와의 갈등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됐었기 때문에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전반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됐었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물론 이 부분에 대한 폐지의 의견도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사위가 본연의 업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폐지하는 것보다는 개선하는 쪽으로 해서 일정한 기간 이상을 법사위에 계류시키지 못하는쪽으로 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을 낸본 상임위에서 이의제기를 하는 방식, 그러니까이의제기의 문턱을 지금의 5분의 3에서 과반수정도로 낮춰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각 상임위별 본래의 기능을 충실히 하면서도 법사위와의 갈등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저는 권은희 의원께서 내신 안이 현실적으로 가장 설득력 있는 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서영교 권은희 의원님 안까지 얘기 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김종민 위원 저도 유의동 위원님하고 같은 의견인데요. 지금 대체로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그 강도는 다르지만 문제 제기가 됐고, 제가 지금 법사위 가서 몇 달 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체계·자구 이상의 심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별로 이견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개선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체계·자구가 간단한 건 아니에요, 체계·자구 심사 자체가. 그래서 그 기능을, 아까 여기 보니까 홍익표 의원안에 보면 법제지원처를 신설해서 거기서 심도 있는 논의를하자, 저는 이게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체계·자구 심사를 강화하고, 오히려 체계·자구 심사를 명분으로 한 본안 심사를 없애는 이게 기본 방향이 돼야 된다. 체계·자구 심사가 약해요, 지금 사실은. 이것 법사 위원들한테 맡겨 가지고는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체계·자구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재적위원 과반수로 완화하고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기본적으로 여기에 명문화 규정을 해서 본 안 심의를 금지하는 명문을 두고 그리고 법제지원처를 신설해서 체계·자구 심사에 대한 전문적인 심사 기능을 국회에서 좀 강화하는 쪽으로, 그것을 좀 덧붙이면 개선 취지가 전달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서영교 이철희 위원님 말씀 주십시 오.

○이철희 위원 저도 상임위를 할 때 상임위에서 합의 처리된 안이 법사위 가서 오도 가도 못하고 있을 때는 자존심이 굉장히 많이 상했던 적이 있고, 지금도 통과 안 된 법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전반기 때 국방위 했을 때 올라간 여야 합의 처리한 법안. 사실 상임위도 합의 처리 안 하면 법안이 안 올라가잖아요, 법사위. 그런데 그게 아직도 안 되고 있는 게 있는데.

저는 법제지원처에서 자구심사 권한을 갖는 것은 반대입니다. 입법권의 침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종민 위원** 권한이 아니고 기능을 하는 거지 요, 지원 기능.

○이철희 위원 어쨌든 판단 기능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입법권은, 국회의원에게 있는 것을 거기다 위임하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하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형태든 이것은 개선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합의해서 올라온 안이, 여기 지금 권은희 의원안처럼 이렇게 대안을 만들수도 있고 또는 법사위 전체 합의로 자구 심사상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자구·체계상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을 해서 예를 들면 소관 상임위에 다시 보내서 재의결을 해 달라고 그러든지 이런 절차를 한 번 더 거치게 하는건 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시한을 정해서 언제까지 다시, 이런 문제점이 법사위에서 볼 때는 있다고 보는데 해당 상임위가 여기에 대한 판단을 언제까지 해서 보내 달라는 시한을 정해 줘서오면 그것이 기속력을 갖도록, 그것은 법사위가

따를 수밖에 없도록 해 주는 게 저는 법사위와 다른 일반 상임위 간의 권한이 동등하게 존중되 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지 않고 다른 데 위 임하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안 맞는 것 같습니 다.

**○소위원장 서영교** 신동근 위원님 말씀 주십시 Ò.

○신동근 위원 여야를 떠나서 사실 법제사법위 원회가 거의 상원 같은 기능을 하고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 문제의식을 갖는 것 같고요.

제가 외국의 사례를 보니까 미국·영국·프랑 스 등 주요국 의회는 이런 기능이 거의 없더라고 요. 유일하게 있는 데가 두 나라인데, 폴란드 하 원에 입법위원회가 있고, 스위스 의회에 법안기 초위원회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모든 법안이 다 거치는 건 아니고 문제 제기가 된 부분을 갖다가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미국이 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심의는 아니지만 법제전 문기구에서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습 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아예 자구・ 체계 심사 자체를 폐지해 버리든지 아니면 상・ 하원을 만들든지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 렇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서영교** 외국의 사례를 말씀하셨는 데, 우선 외국의 사례도 괜찮으시면 한번 또 공 유할 수 있는지, 저도 자료를 좀 주시고요. 이게 또 저희가 제안해서 받은 자료인 것 같은데 한번 그렇게 해 주시지요.

곽상도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곽상도 위원** 우리 법사위가 하는 일 자체가 이미 넘어온 법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하는 것을 본질적인 기능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상임위가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기 능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부처 에서 나름대로 독자적인 법률적인 판단을 해서 행정행위를 쭉 합니다만 최종적으로 이게 마지막 에 가면 대법원이나 검찰이나 이런 데 가서 다시 한번 이게 다 정리가, 한번 또 걸러지고 정리가 되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면 각 행정부처에서 한 것을 최종적으로 법원이나 이쪽에서 마지막 정리하는 그것을 그러 면 다 상원처럼 이렇게 기능하니까 이게 불만이 다 해서 각자 각자 알아서 하자, 각 행정부처나 여기서 다 나누어 가지고 하도록 하자 이렇게 얘 기하는 것이랑 비슷하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도하게 지연되거나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보완하는 조치가 한번 있었고 하니까 그게 좀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법사위에 이런 의견을 전달해서 잘 운영되도록 그렇게 만들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

○소위원장 서영교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 니까?

○**정유섭 위원** 저는 하반기 원 구성할 때 여야 간에 법사위의 심사기간이나 심사제도에 대해서 좀 개선해야 되겠다는 그런 합의는 있었던 것으 로 지금 확인했습니다. 이게 그러면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권은희 의원안은 60일인데 60일이나 90일, 30일 이렇게 여러 날짜가 있고 또 자구심 사 외에 내용까지 심사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 게 할 거냐 하는 게 지금 쟁점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오늘 소위원회에서 한 번 논의해 갖고 결정하기는 어렵고, 여야 대표 간에 어느 정도 얘기가 이루어지면 이것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는 필요할 것 같다고 봅니다. 우리 가 여기서 그냥 결정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커서. 예를 들면 우리가 30일 60일 90일 심사기간을 하자 이렇게 정하기도 그렇고 또 자구심사 외에 는 안 된다 이렇게 결정하기도 좀 그렇고.

○이철희 위원 우리가 결정해야지요.

**○소위원장 서영교** 그렇지요.

○정유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이걸 개 선하자는 저기는 있으니까 조금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은 줘야 된다는 거지.

○이철희 위원 제 생각에는……

미안해요, 끼어들어 가지고.

저는 여기서 결정을 하면 좋겠고요. 어차피 이 것 적용하는 것은 21대부터 해야 되는 것 아닙니 까? 당장 하기는 어려운 것 아니에요? 현실적으 로 지금 여야 간의 문제도 있고, 당장 법사위 위 원장을 맡고 계신 정당 이런 쪽에서 보면 지금까 지 관행에 의한 권한이 침해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21대부터 적용한다는 전제하에서 우리가 대안을 확실하게 내는 게 좋지요, 대표한테 위임 할 게 아니라. 그때는 누가 법사위원장 될지 모 르잖아요.

○유의동 위원 그……

○소위원장 서영교 잠깐, 사회권도 존중을 해 주시겠어요?

**○유의동 위원** 죄송합니다.

○소위원장 서영교 좀 쉬었다, 숨을 한 번 쉬고······

유의동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유의동 위원 어떤 우려가 있는지는 알지만 우리 소위의 이름이 국회운영개선소위인만큼 여기서 우리가 기반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어렵다, 그리고 방금 이철희 위원님께서 관행에 의한 그런 것들을 무시하는 절차라는 것까지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1대에 적용된다는 전제로 우리가 열어 놓고 이게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국회상을 만든다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저는이 소위에서 매듭을 짓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이 다 원내 지도 부에 속해 계신 분들인데 여기서 결정을 못 내면 어디서 내겠습니까?

- **○정유섭 위원** 아니, 21대······
- ○소위원장 서영교 잠깐만요, 정유섭 위원님.
- ○정유섭 위원 죄송합니다.
- ○소위원장 서영교 먼저 의견을 제시하려고 신청하신 분이 계십니다.

박경미 위원님 말씀 주세요.

○박경미 위원 여기 정리가 잘돼 있는데요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제도를 폐지할 것인지 아니면 60일·90일 이렇게 단축할 것인지 아니면 국민에 의한 청원, 이것은 별로 지지하는 분이 많은 것 같지는 않은데요 100만이 연서를 하면, 그러니까 직접민주주의의 구현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도 그렇게 바람직한현상은 아니라고 보여서 폐지냐 아니면 기간 축소냐 이것부터 한번 의견을, 오늘 저는 결정을하면 좋겠고, 그런데 결정은 혹여 유예하더라도 대략적인 의견은 한번 물어서 향방을 택하시는건 어떨까요? 그러니까 저는 폐지이기 때문에,죽 한번 의견을……

○소위원장 서영교 좀 더 원활하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 또 성과를 내기 위해서 폐지의견을 내시 면서 폐지냐 아니면 그 기간을 단축해서 가느냐 라고 하는 의견을 묻자는 의견이 한 가지 나왔습 니다.

정유섭 위원님 얘기도 있으셔서 그 전에 제가, 어떻든 정유섭 위원님 말씀하시고 나서 수석전문 위원님께서 다른 나라의 사례, 신동근 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사실 우리는 익숙해 있으나, 저도 법사위에서 권한을 많이 써 본 사람으로서 그런 데 우리가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으나 저도 외국 의 사례를 보니까 외국에 이런 사례가 거의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그렇구나'라 고 새삼 느꼈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문제가 있다 는 걸 알면서도 또 익숙해져 있는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래서 얘기를 잘 풀어 나가길 바라고.

정유섭 위원님 말씀 주세요.

○정유섭 위원 제가 이 내용 중에서 반대하는 내용과 찬성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국회법제지원처 이런 걸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입니다. 그리고 또 100만 명이상 연서가 있을 경우에 바로 본회의에 부의한다 그것도 반대해요. 그러나 심사기간을 지금 120일에서 60일 줄이자라든지 또는 본질적 내용을 법사위에서 심사하는 것, 자구수정 이런 걸넘어서는 것은 곤란하다 그런 데까지는 동의를하는데, 조금 전에 신동근 위원님이 얘기하셨나요, 21대에 적용할 건데 꼭 오늘 해야 되나 하는생각은 들거든요.

- ○**이철희 위원** 그때 가면 못 하니까요.
- ○정유섭 위원 아니, 뭘 못 해.
- ○이철희 위원 아니, 정해진 건 못 해요.
- ○정유섭 위원 올해 이번 정기국회도 아직 많이 남았고 또 21대에 적용할 것 대표들 논의에 한 번 더 부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있는 데 오늘 결정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 ○소위원장 서영교 위원님, 그리고 21대 국회 적용 이야기는 두 분의 의견 속에서 나온 이야기 지 여기서 합의되거나 이런 것도 아니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요 당장 폐지를 얘기하는 박경미 위원님도 계시고 이렇다는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 ○이철희 위원 당장 폐지예요?
- ○박경미 위원 아니요, 그냥 폐지라고 했는 데……
- ○소위원장 서영교 아니, 선도적으로 치고 나가 야 또 그다음도 좁혀지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정유섭 위원님 말씀 있으셨고. 성일종 위원님.

○성일종 위원 법사위가 본래의 기능이 지금 수 행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

런 법안을 낸 건 이해하는데 그래도 여러 가지 다른 상임위에서 한 것에 대한 마지막 필터링하 는 과정을 없애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 다.

그리고 박경미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던데 청원 같은 경우는 정말 이게 조직 동원하거나 어떤 특 정 단체에 의해서 왜곡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건 아예 거론이 돼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시간을 가지고 조금 더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제가 드립니다.

**○소위원장 서영교** 오늘 일정을 잠시 여러분과 동의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사실은 원내 대표들 간의 합의로 각 법안소위를 거의 매일 했 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게 어떻게 되든 간에 매 일 하면서 풀가동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저희 운영위도 성과도 내고 또 묵은 과제들을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 괜 찮으시다면 이 회의를 하고 오찬 하시고 난 이후 에 오후에도 회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사실은 암묵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함께 오후 일정도 같이 회의를 했으면 한다라는 말씀 을 드리고, 또한 그렇게 해서 오늘 오전에 의견 제시하신 부분들을 한 번 더 검토하시고요 의견 을 모을 수 있는 것들은 모아 나가면 좋겠다 이 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일종 위원 인위적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지 요. 그냥 순리대로 이렇게 가시지요.

○소위원장 서영교 예, 순리대로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은 무조건 동의를 하고요.

○김종민 위원 일단 제가 추가로……

○소위원장 서영교 김종민 위원님 말씀 주십시 오.

○김종민 위원 일단은 앞 안건도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저는 조금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는 게 이게 여당 • 야당의 이해관계만이 아니고 실제로 법사위와 다른 상임위들 간에 오래된 문 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결단 을 해야 돼요. 이게 심의가 더 된다고 해서 새로 운 변수가 생길 문제는 아니고 이제 결단을 할 거냐의 문제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법사위가 숙의 기능 차원에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잖아요.

그런데 법사위에서 숙의 기능을 하는 게 두 가 지입니다. 하나는 정말로 이게 다시 한번 봐야 되는 이런 내용에 대한 판단 문제가 하나 있고-그게 지금 현행법에 어긋나더라도 하여간 그런 기능을 수행하니까 그래도 좀 존중해 주자—또 하나는 체계 · 자구에 대한 숙의적 기능, 두 가지 가 있는데 저는 이 제도로는 이 두 가지 다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일반 의원들이 문제 제기하는 게 정당하다고 보는 게, 첫 번째로 내용에 대한 숙 의 기능은 우리가 일종의 상원제도가 없기 때문 에 법사위에 그 기능을 주는 걸 묵인하는 거거든 요. 그러니까 이런 이중적 숙의가 필요하지요. 그 런데 이중적 숙의가 상원·하원 개념으로 되게 되면 대부분이 상원은 대개 숙의에 적당한 의원 들로 구성이 됩니다, 의원 자체가. 그래서 보통 하원에서 판단한 것들이 상원의 어떤 인원 구성 들의 다른 차이 때문에 보완적 기능이 충분히 있 기 때문에 그 숙의라고 하는 게 어떤 헌법적인 정당성을 갖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헌법에 안 되어 있으니까 법사위에 그것을 만약에 준다고 그러면 실제 운 영도 그런 기능을 해야 이게 300명 의원들한테 동의가 주어지는데 실제 운영은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법사위원들이 이른바 상원이 가 지고 있는 숙의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문제를 검토한다기보다는 법조 전문 위원님들이 법적인 측면에 대한 검토들이 대부분 사실인데, 그런데 이 문제는 또 어떤 의미에서 보면 법제지원처에 서 실무적인 검토를 더 세게 하는 게 필요한 내 용이에요, 사실은 이것은.

지금 전문위원님들이 보통 법제 검토를 해 가 지고 의견을 올리잖아요. 그래도 빠지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이것은 의 원의 의결권·입법권 범위가 아니에요, 사실은. 입법권 이전에 실무 검토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부실한데 이것을 위원님들한테 실무 검토를 해라, 이것도 저는 안 맞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개 보면 어떤 정무적이거나 아니면 법의 내용 에 대한 판단 위주로 얘기를 하지 법제 체계·자 구에 대한 실무적인 검토의견들이 많이 안 나옵 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는 이 두 가지 기능을 하려면 만약에 이것을 가동하려면 법사위 기능에 대해서 법사위 구성이나 이런 측면에서도 숙의적 기능을 좀 더 강화하는 쪽으로 해서 유지를 시키든지, 그 리고 법제지원처를 두고 실무적 체계ㆍ자구 심사 의 국회 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이렇게 정리 정 돈해서 유지를 하든지, 아니면 어차피 우리가 헌 법상에 한계가 있으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임 위에 숙의적 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면 결국 체계·자구 심사권만 법사위로 해서 이번에 결단 을 좀, 꼭 오늘 회의가 아니더라도 이 정도 나온 김에 결단을 내려야 될 문제 아니냐……

○성일종 위원 김 위원님 말씀대로 얘기하면 법 사위가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김종민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필요 없을 수도 있고 아까 얘기한 숙의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니까……

○성일종 위원 그리고 우리가 상원이 없잖아요. 그러니 그 기능을 보강해서 만들었던 제도인데 지금 그러한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사위의 무용론을 제기한다 그러면 이것은 새롭게 봐야 돼요.

○김종민 위원 제가 두 가지를 제시했지요. 만약에 숙의적 기능이 굳이 우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 법사위가 그렇게 운영되도록 우리 국회가결단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성일종 위원 또 법사위의 장점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자구 수정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또 다른 헌법의 가치나 이런 것들하고 상충이 안 되 는지에 대한 것들도 실질적으로 기능하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법사위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 단 말이지요. 그런 긍정적인 면도 있단 말이지요.

○소위원장 서영교 우선 김종민 위원님 말씀 주 셨고요.

성일종 위원님 더 말씀 주실까요?

○성일종 위원 아니요, 그래서 김종민 위원님 말씀대로 법사위가 필요 없는……

○소위원장 서영교 법사위를 가서 보면 법사위 가······

○김종민 위원 숙의 상임위로 제도개선 해야 돼요. 숙의 기능을 하자, 그래 가지고 그것을 보강해 줘야 됩니다.

○성일종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내놓은 것인데, 역기능적 측면에서 이런 대안이 나온 것인데 그 부분만 본다고 한다면 상임위가 없어도 된다라고 하는 논리가 나온다……

○김종민 위원 나는 둘 중의 하나 하자는 거예요. 지금 어정쩡하게 하지 말고 숙의 상임위를 강화하든지 아니면 체계·자구 심사권만 실무적으로 검토하든지 결단을 내야 된다 이것이지요.

○소위원장 서영교 질문 한 가지만, 다른 나라 의 사례가 상원에서 하원에서 나오는 법안 내용을 심도 있게 숙의하나요?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

○국회사무처입법차장 한공식 지금 일반적으로 상원 기능이라는 게 하원의 부분을 보완한다고 일반적으로 봐야지요.

○소위원장 서영교 보완한다고 하지만 그 법률 내용을 보완하거나 그것을 숙의해서 보완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우리 법사위가 위에 있듯이 상원 기능을 한다 이런 이야기지 그 내용을 거기서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상원이 없어서 그것이 지금 필요하다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 한번 짚고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해봐야 될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다 주셨고요. 그 래서 더 의견 없으시면……

얘기가 조금 좁혀진다라고 하는 것은 각 상임 위가 제대로 자기 기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에 다 동의하고 상임위가 충분히 논의한 부분은 그것대로 또 존중받아 가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 에 동의하고, 그런데 어떻든 서로 법률이 상충되 는지 아니면 헌법에 위배되는지, 체계·자구에 문 제가 있는지를 한 번은 거르는 것들이 필요하다 라고 하는 기능을 이야기하고, 그런데 이것이 꼭 법사위여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서 그 안을 의 원님들이 내신 안이 있고 그리고 또 '이 정도까지 는 필요해'라고 해서 의원님들이 내신 안이 있으 면서, 그러나 거기서 오랫동안 머무르지 않게 체 류 기간을 좀 줄이고, 아니면 '본 상임위에서 위 원장과 간사 간에 합의하면 현재는 5분의 3인데 과반 정도만 돼도 본회의로 넘길 수 있어', 이 두 가지 정도 안이 법안으로는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아니, 현행 안도 고민이 좀 필요해요'라고 하는 위원님이 계시기도 하고 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의견을 조금씩 좁혀 가야 하는데 그사이에 외국 사례가 하나 있는 것이 있 으니, 신동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실 우리 만의 특별한 사례기도 해서 수석전문위원님께서 한번 객관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조금 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 영국 · 프랑스 등에서는 우리와 같은 법

사위원회에서 체계 · 자구 심사하는 그런 사례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위원회에서 담당하는 사례로는 폴란드 같은 경 우에는 입법위원회에서 유관 법률안과의 일관성 심사, 이게 체계 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업 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스위스 의회에서는 본회의 최종표결 전 에 법안기초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 다. 여기에서는 법체계상 모순 제거도 있지만 스 위스는 또 4개의 언어가 공식으로 되어 있기 때 문에 이런 언어들로 정확하게 되어 있는지 여부 를 검토하는 그런 측면에서도 법안기초위원회를 통과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제전문기구가 설치된 사례로는 미국 과 일본 같은 경우에서는 의원 또는 위원회의 요 청에 따라서 이런 기구에서 체계 · 자구 심사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에는 의장께서 모순ㆍ저촉 되는 사항 및 자구 정리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에도 마지막으로 본회의 의결하고 정부로 이 송할 때에는 의안 정리권에 의해 가지고 의장님 이 결정적인 오류나 이런 것은 다 잡아내고 있습 니다.

그리고 법률안 의결 후에 심사하는 사례, 다음 페이지입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에서는 최종적으로 헌법위원 회에서 헌법에 적합한 것인지, 이것도 우리의 체 계 · 자구의 체계 정도에 들어갈 것 같은데요. 거 기에 대해서 판단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 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서영교** 고맙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공포 전에 한다는 거지 요? 이게 상임위는 다 통과된 경우고요?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서영교 그러니까 상임위 통과되고 또 다른 데서 하는 게 아니라 전체 통과돼서 공 포하기 직전에 한 번 더 거른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 법제실 등을 통해서 하는 것은 저희도 또한 법안을 낼 때 법제실이 한 번은 검토해 주고 법안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기는 하고요.

이런 내용이 있어서 사실은 보다 보니까 우리 가 좀 특별하기는 하다, 이런 것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일종 위원님.

○성일종 위원 김승기 위원님, 어쨌든 프랑스 이런 데도 국회 내에서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이 루어질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이것은 국회 밖인 것 같 습니다. 우리로 치면 헌법재판소나 이런 것 같습 니다. 일단 상하 양원 국회를 다 통과한 법안이 대통령이나 총리, 하원 의장, 60명의 하원 의원 등등의 심사 청구가 필요하다고 하면 헌법위원회 에서 심사를 해 주는 이런 제도인 것 같습니다.

○성일종 위원 우리 제도하고는 좀 다르니까 그 렇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기간을 정해 가지고 법사위원회에 서 그 한도의 기간 내에서 처리하자라고 지금 개 정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외국도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왜 이걸 여쭙느냐 하면, 효율성이 있을 것 같 기도 해요. 그런데 법안이 쟁점이 없거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잘 처리가 되고 있잖아 요. 그리고 우리 국회가 통과하고 있는 법안의 수를 보면 외국보다 결코 적지가 않더라는 거예 요. 우리가 효율만 좇자 그래 가지고 무조건 있 는 법안들을 기간을 정해 놓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까…… 그렇지 않아요? 정말 급하고 이런 부분이야 여야의 협의를 통해서 하고 이렇게 갈 것 같은데 그렇게 기간까지 만들면서까지 굳이 해야 되는가…… 답답함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이해는 가요. 그러면 외국도 이렇게 하고 있는 건지 아시는 대로 한번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소위원장 서영교 외국 사례를 검토하기 전까 지 신동근 위원님 먼저 말씀 주십시오.

○신동근 위원 어차피 소관 상임위에서 여야 간 에 합의를 해야 통과가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여야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제사법위원회 에 가서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는 특정 개인의 취 향에 따라서 법을 잡아 놓고 통과를 안 시켜 버 리는 게, 여야 원내대표끼리 협의를 했음에도 그 게 비일비재하잖아요. 사실 현실 아닙니까? 그러 면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느냐, 이 런 현실적인 것을 한번 고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서영교 그러면 지금 우선 또 말씀 주실.....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사실은 국회의 위원회에서 담당하는 사례가 폴란 드하고 스위스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사례를 알 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간을 정해 가지 고 하는 경우는.

○성일종 위원 그런데 기간을 놓고 하는 데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내 감에.

○소위원장 서영교 왜 기간이 존재하느냐 하면 법사위에서 묶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나라는 우선 이렇게 묶이는 예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기간도 없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성일종 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야…… 위원장님 말씀 끝나시고 제가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서영교 성일종 위원님 말씀 주십시 오.

○성일종 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야의 협의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그 기능 속에서 가야지기간을 놔두거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허들을 더 만들면…… 완벽한 건 없거든요. 운영하는 데문제가 있는 것이지, 완벽하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 사실 또 여러 가지 블록이 지금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운영적 측면에서 가야지 자꾸 법으로 그걸……

○소위원장 서영교 위원님 말씀 끝나셨습니까? 우선 지금도 법사위에서 체류 기간이 길어지면 통과하는 기간이 있지요?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지금 120일로 되어 있습니다.

○소위원장 서영교 지금 120일이 지나면 법사위에서 하지 않더라도 본회의로 올릴 수 있게 된예가 얼마 전에 세무사법 같은 게 있었습니다. 법사위에 법조인들 중심으로 있다 보니까 세무사법이 통과돼서 올라갔는데 거기서 통과가 안 돼서 여야가 다 합의해 가지고 세무사법을 본회의에 올린 사례가 바로 그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같습니다.

○성일종 위원 제 얘기는 바로 그런 제도가 작 동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거지요.

○소위원장 서영교 지금 120일이지요. 그래서 120일이 기니까 그것을 60일 또는 90일 안이 법 안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지금 법안으로 의원님들이 제출하셨으니 우리는 그 법안을 검토해서…… 이철희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이철희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이게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마는 당장 여야의 문제로 이해될 수도 있으니 적용 시기를 뒤로 미뤄 놓자는 거고요. 그러면 이게 여야의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는 거지요. 다음에 누가 다 수당이 되고 누가 법사위원장이 될지는 모르는 사안이니까, 그렇게 되면 여야의 문제는 아니니 까 이른바 휘발성은 좀 제거가 되는 거고요.

만약 법사위의 자구심사 권한이 약해지거나 폐지된다 그러면 상임위에서 여야 간의 논의가 더치열해지겠지요. 잡음은 거기서 잡을 수 있는 거지요, 심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런 장치들이 이미 다 있는 건데 여기다 더해 가지고 하나의 장치를 더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은 국회의원들의 권한을 침해하면서 또 상임위의 권한을 침해하면서 당 지도부가 뭔가 정치게임을 하는 수단화되어 버린 게 현실이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당 지도부가 일반 국회의원이나 당 소속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열어 주는 관행이 있다 그러면 저는 그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여야 간의 이른바 갈등이나 중립적으로 게임을 하는 것은 상임위 차원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서 풀자고 저는 주장을 하고 싶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저는 처음에 들어올 때 야당으로 들어와서 지금 여당이 됐습니다마는 야당일 때 합의해서 통과된 법안이 가서 진도가 안 나가고 지금 묶여 있는 것도 있고요, 여당일 때 법안도 그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저는 이것은 여야의 문제는 아닌것 같고, 또 지금 당장 어떻게 적용하자 그러면 그것이 현실적으로 부담이 될 수도 있으니 21대국회에 적용된다는 전제로 우리가 좀 과감하게이 문제에 대해서는 답을 좀 내고 더 속된 말로우리가 답을 낸들 이게 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또 잡으면 할 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과감하게 해 보지요.

○소위원장 서영교 이철희 위원님 의견 들었습니다.

신동근 위원님 의견 들으시고 그다음에는 의견을 좀 좁혀 가도록 하시지요.

○신동근 위원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임위에서 서로 상호 간에 충분히 심의해서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법제사법 위원회에서 정치적 문제가 아니고 말 그대로 법안 간의 체계나 자구 문제가 생기는, 소위 말하는 어떤 확률이라 그럴까요, 그런 사례들이 좀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개인의 소신이라든지 정치적 이유로 잡는 게 아니고 순수하게 체계・ 자구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나요?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사례는 잘 생각이 안 납 니다마는 22페이지에 보시면 법률안 체계·자구 심사 소요기간이 평균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건 법사위에서 통과된, 처리된 법률안 기준인데요. 30일 미만이 889건, 이게 20대 국회 시작되고부 터입니다. 그리고 30일 이상 60일 미만이 251건, 120일 이상 끌다가 본회의를 통과한 것도 71건이 있습니다, 총 1470건 중에서.

○신동근 위원 그런 통계는 없다는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예, 그것은 제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소위원장 서영교 제가 법사위를 해서요, 순수 하게 체계·자구에 문제가 있으면 그것은 그렇게 시간이 가지 않습니다. 체계·자구심사 부분은 사실 그 부분을 정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그것 을 좀 더 심도 깊게 하기 위해서 소위로 넘어가 지만 체계 · 자구심사는 사실 여야 이견 없이 통 과되는 거기 때문에 빨리 통과되는 거지요.

곽상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곽상도 위원** 제가 교문위 있을 때 사학법 관 런해서 이것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하는 걸 주장을 했었습니다. 주장했더니 상임위에서 어떻게 넘어 갔느냐 하면 그건 법사위에서 따지면 되는 것 아 니냐고 그렇게 해서 막 우격다짐으로 해서 법안 이 한 번 진행된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로 헌법에 어긋나느냐 안 어긋나느냐 하는 것은 그 안의 내용까지 다 들여다보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심 의해야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걸 자꾸 일부 부작용 문제만 얘기를 해서 완전히 뜯어고 치자고 하는 것은 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법안 처리되는 것 봐도 되게 오래 걸리고 하는 것보다는 지금 30일 이내에 거의 대 부분 처리된다고, 36.8일 이렇게 걸린다고 하는데 평균이 36.8일이면 그렇게 어떤 보완을 해야 되 거나 문제가 되는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 각을 합니다.

개개 의원들께서 내신 법안이 안 되고 하니까 답답한 것도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사 실 위헌 여부를 가리는 데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 는 가면 1년씩, 2년씩 보통 걸립니다. 그걸 가지 고 국회에서 120일 안에 다 끝내라고 얘기하는

것도 좀 과한 측면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것은 조금 더 걸릴 수 있고 조금 덜 걸리기도 하고, 실태가 이렇게 잘 나와 있네 요. 30일 미만이 889건으로 몇 %입니까, 이게 한 육칠십% 정도 되네요. 60일 미만까지 다 들어가 고 하면, 120일 미만까지 다 들어가면 구십 한 몇%, 구십 한 사오% 정도가 거의 120일 안에 다 처리되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논의해야 되는 실익 이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서영교 김종민 위원님 말씀 주십시 오.

○김종민 위원 만약에 그렇게 법사위의 기능을 우리가 존치시키자는 쪽으로 가자면 아까 얘기한 대로 체계 · 자구심사라고 하는 법을 지키는 쪽으 로는 정리를 해 주셔야 된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실제로는, 제가 법 사위 위원으로서 이런 걸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법사위 노하우가 되게 많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 로 곽상도 위원님처럼 신사분들이나 헌법이나 법 률 충돌만 따지지 거기에 수많은 이해관계가 실 제로 가동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그 런 숙의적 기능에 대해서만 존중을 해 주는 것으 로 가려면 적어도 본질적 내용에 대해서는 그만 한 명문규정을 두든지, 그다음에 일수도 36.8일이 평균 일수면 한 60일 정도로는 제한을 해 주셔야 돼요.

이런 정도만 개선을 해서 법사위를 계속 존치 시키자 이런 정도만 해도 저는 충분히 합의가 가 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제도로는 기 술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아요.

○소위원장 서영교 그러면 우선 지금 말씀으로 는 우리가 다는 ..... 원래 법에 뭐라고 되어 있습 니까?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까, 법사위가?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법사위의 업무 범위 에 .....

○소위원장 서영교 법사위 업무 범위에······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체계·자구 심사가 되어 있고 그리고 법안을 통과할 때는 당해 상임위원 회에서 심사한 후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로 간다……

○박경미 위원 제가 한 가지 한번 여쭙고 싶은 데요.

상임위에서 미처 잡아내지 못한 그런 결정적인

흥결이 이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를 통해서 완성도가 높아진 그런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까, 소개해 주실 만한? 그래서 이것이 존치되어야 될만한 어떤 당위성을 보여 주는 그런 예가 있으면말씀을 해 주셨으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각 상임위에 이런 법 체계·자구 심사를 할,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이 법을 보는 그런 전문가가 포진해 있지 못했던 그런시절에 이것을 법사위에서 전문성 높게 검토한다라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각 상임위마다전문가가 있고 또 법제처의 지원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렇게 이중장치가 옥상옥으로 있을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데요.

일단 예가 있으면 좀 소개를 해 주시지요, 저희가 그래서 필요하구나 하고 승복할 만한.

○김종민 위원 제가 말씀드릴까요?

○소위원장 서영교 그러면 그것은 조금 더 있을 만한 게 있는지 살펴봐 주시고요. 그렇게 하고……

김종민 위원님 더 말씀……

○김종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박경미 위원…… ○소위원장 서영교 제가 조금 아까 질문했던 것 하나, 원래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위원회에서 법률안의 심사를 마치거나 입안을 하였을 때에는 법제사법 위원회에 회부하여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소위원장 서영교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친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거쳐야 한다.

○소위원장 서영교 거쳐야 한다. 그러니까 체계 와 자구로 국한되어 있는 것이지요?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서영교 김종민 위원님 말씀하십시 오...

○김종민 위원 지금 박경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제일 따끈따끈한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에 법사위에서 국민건강진흥법에 대한 심사를 했는데요. 이게 내용이 뭐냐 하면 담배의유해물질의 종류의 성분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개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담배에 대한 유해성을 홍보하자는 건데 이 똑같은법안이 오래전에 기재부장관한테 보고한다는 담배사업법 관련법이 있어요. 그런데 기재부는 뭐

나 하면 신 택스(sin tax)를 관리하는 세제 부서 니까 신 택스 관련돼 있는 근거로서 유해성분들을 보고받을 권리가 있다 해서 법안을 만든 것이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 관련돼 있는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으니까 또 이 법을 만드는…… 2개 다 일리가 있는 법이잖아요. 그런데이 똑같은 일을 두 군데서 다 하는 것은 법적 충돌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 법사위에서 이게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둘 중 하나로하자' 아니면 '다시 회부해서 양쪽의 조정을 거치자' 이런저런 논의가 있었단 말이지요. 물론 이것도 그냥 전체회의에서 2소위로 넘어갔는데……

하여간 이런 것 같은 경우가 법사위에서 체계·자구의 충돌 사항으로 다뤄질 수 있는 안인데 이런 안이 10개 중에 제가 보기에는 한 2개? 나머지 8개는…… 취지가 되게 다양합니다. 그런데 하여간 결국에는 최종 명분은 법률적 문제, 헌법적 문제, 평등의 원칙 위배 하지만 내용에서는 사실상 상임위의 심의 내용을 훼손시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이거 정도는 우리가자제하는 쪽으로 이번에 한번 모아 보자. 이런기능들을 하게 하는 것이지요, 계속. 이것은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곽상도 위원 잠깐만요, 지금 자꾸 오해를 하시는데 행정부처가 자기 나름대로 검토해서 행정행위를 다 합니다.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나름대로도 법률 검토 다 합니다, 각 부처가. 그리고 나중에 가면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 이 문제는 헌법이나 법률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서 위헌도 나고 부적법하다는 판정도 나고 합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이런 것을 심사를 하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다는 것 저는 그것을 이해를 잘 못 하겠습니다. 이 법을 시행을 해서 60일 때문에, 조금 더문제되는 것을 한 번 더 걸러내고 해서 하자는 것을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120일 안에 하면 무슨 특별히 문제될 만한 게 뭐가 있습니까?

○김종민 위원 제가 반론을 좀 제기할게요.

○**곽상도 위원** 아니, 누구라도……

각 상임위라고 하는 게 일종의 행정 부처들이 잖아요. 행정 부처들이나 이런 데서는 그 부처 중심으로 그 부처 내용을 가지고 전부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다 모이면 또 달라집니다. 이게 다 모아 가지고 판단을 하면 이렇게 달라지는 거

예요. 그래서 그것을 판단하고 평가를 해 보자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게 너무 오래 걸리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으 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하게 제한을 하자 하 는 것은 지금 제한하는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고 실태가 이렇게 가니까 이것에 대해서 또 다른, 이렇게 줄여 가지고 가는데도 이 사람들이 안 하 고 있어서 문제가 되니까 또 손을 보자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적정하게 어느 범 주 안으로 들어와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왜 또 이것을 손을 대야 된다고 하는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김종민 위원 제가 간단하게, 약간 이견인데요. 이게 행정부와, 행정부의 여러 가지 의견들이 조정되는 것과 저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고 봅 니다. 왜냐하면 행정부는 의결권 · 결정권을 갖고 있는 데가 아닙니다. 어떤 의견을 내든지. 여기서 의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집행권의 범위 내에서 있는 것이고…… 그런데 상임위와 법사위의 의견 충돌은요 이것은 되게 중요한 헌법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의결권을 어디서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 거든요. 그게 충돌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다룰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지요.

기본적으로 의결권은 상임위에 있고 법사위에 서는 거기에 대한 체계·자구적 보완 기능을 한 다 이렇게 되면 지금 이 헌법질서 속에서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상임위의 의결권을 침해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그러면 이것은 좀 시 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현실이 후자에 가 깝다는 것이지요.

○**곽상도 위원** 아니,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제가 행정부처를, 예 를 들어서 집행권이고 의결권이고 이렇게 달라지 는데…… 아니, 상임위는 상임위 나름대로 그 각 도에서 판단하고 의사결정을 합니다, 대부분 상 임위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다른 부처들 하고 같이 앉아서 얘기를 하면 이게 어떤 문제가 있다 하는 게 답이 나옵니다.

○김종민 위원 그러면 법을 고쳐 줘야 돼요, 법 사위에 관련된 법을, 법사위에 그런 기능을 집어 넣어 줘야 돼요.

○**곽상도 위원** 이 체계라고 하는 것을, 지금은 자꾸 체계라고 하니까 31조를 32조로 하느냐 33 조로 하느냐 이게 체계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그 런데 제가 받아들이는 체계라는 것은 그게 아니 거든요. 체계는 헌법질서라든가 법률질서라든가 다른 법하고의 관련된 질서라든가 이게 다 이 체 계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소위원장 서영교 곽상도 위원님 말씀 잘 들었 습니다.

우선 의견을 좀 좁혀 가야 하기 때문에요.

우선 한 가지는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만 한다, 체계·자구 심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현재 법에 있는데요. 그 얘기는 법사위는 체계 · 자구 심사를 한다는 것으로 하는 것에는 동의가 되시 지요? 그 내용으로는 그 외에 다른 것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인 것 같은데, 현행법으로도?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것을 강조하고 짚을 필요도 있지 않나……

그래서 '법사위가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 체 계·자구 심사를 한다'이것 한 가지…… 그런데 이 체계 · 자구 심사도 폐지할 것이냐 말 것이냐. 폐지하는 법안이 올라와 있으니 폐지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하나 접근해야 하고요.

두 번째, 폐지한다라고 하면 그 내용을 접근하 고 그다음에 가고…… 우리는 폐지한다는 의견이 있고 폐지하지 않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 견이 있으면 우선 그 의견은 일치되지 않은 것으 로 우선 보류를 하고.

그러면 이 내용 외에 체계·자구 심사를 놔둔 다라고 하게 된다면 또 그다음에 올라온 법안은 법사위에 계류될 수 있는 최대한의 시간을 90일 로 하자라고 하는 안이 하나 와 있고 그다음에 60일로 하자라고 하는 안이 있습니다. 30일 안도 있나요?

**○김종민 위원** 예, 30일 안도 있어요.

○소위원장 서영교 예, 30일 안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3개의 안으로 좀 더 접근해 보 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100만 명의 서명을 받으 면 법률로 입안할 수 있다고 하는 내용도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접 근을 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대신 체계·자구 심사도 폐지하고 그리 고 또 이것은 21대부터 합시다라고 하는 의견도 오늘 나오신 것 같습니다. 우선……

○김종민 위원 이철희 위원이 나갔네……

○소위원장 서영교 유의동 위원과 이철희 위원 께서 21대로 접근하자라고 하는 의견도 나왔는데 사실 이제 해결을 해야 되니까, 저는 이 안에는 없지만 21대 의견까지는 여러분이 의견을 모으신 다면 또한 그래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체계·자구 심사 건도 없애고 상임위가 완결구조를 갖자 그리고 혹 공포 전이나 이럴 때 체계·자구 심사를 한 번 더 한다면…… 지금 기 능에도 의장님께 그 기능이 있다고 그랬지요? 법 안이 본회의 통과하고 나서마저도 헌법적 문제가 있나 없나를 의장님 산하에 또 검토하고 있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지금 기능에서도?

○국회사무처입법차장 한공식 의장님이 그 정리 권이 있는데요 그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의사국 의안과에서 법안을 이송하기 전 단계에서 실무적 으로……

○소위원장 서영교 실무적으로 한 번 더 결정권 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국회사무처입법차장 한공식** 예, 자구 정리하 는……

○소위원장 서영교 그러면 의견을 조금 좁혀 보 겠습니다.

체계·자구 심사를 어떻든 상임위에서 완결구 조를 갖자 그리고 체계·자구 심사권은 또 다른 구조를 만들자라고 하는 의견이 모아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의견에 대해서는……

○국회사무처입법차장 한공식 그런데 위원장님, 의장님이 하는 것은 체계까지는 아니고 자구정리 권이라 그래서 좁은 의미의 그것을 가지고 있다 고······

○소위원장 서영교 성일종 위원님 의견 주십시 오.

○성일종 위원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미 곽상도 위원님이 다 말씀하신 것 같은데 법사위가 기능 을 하고 있는 것을 없애자고 하는 것은 그게 법 사위를 없애자고 하는 거니까……

○소위원장 서영교 아니, 법사위는 법사위 소관 의 법률이 있지요.

○성일종 위원 현행대로 그냥 가자는 얘기이고 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냥 두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신 것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120일이 라고 하는 것을 줄이는 건 나름대로 의미는 있겠 지만 그 또한 의장께서…… 예를 들면 전에 세무 사법 같은 경우 올렸듯이 그런 기능이, 할 수 있 으니까 그냥 놓았으면 합니다.

○소위원장 서영교 성일종 위원님은 그대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폐지 의견 부분에는……

○신동근 위원 저는 아까 폐지 의견 냈고요.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아까 이철희 위원 얘기한 것처럼 21대부터 적용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서영교 그리고 박경미 위원도…… 어쨌든 각 상임위가 완결적 구조를 갖자 이런 부 분으로 의견이 좀 모아진 것 같습니다, 이쪽 분 으

유의동 위원님.

○유의동 위원 이 부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결론짓지 말고요 어차피 이 문제의 출발이 여러 위원님들의 문제 지적도 있었지만 각 당의 원내대표들께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셔서이것을 우리가 본격적으로 다루게 된 것인 만큼오후 시간에 속개를 해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하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이석하신 위원님들도 계신데 지금 이 자리에서 매듭짓는 것은 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서영교 이석한 위원님들도 계실 때 빨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웃음소리)

우선 유의동 위원님 말씀으로는 지난번에 합의 했다……

○김종민 위원 이것 합의사항 아니에요? 합의사항이니까 우리가 진도는 나가 줘야지.

○소위원장 서영교 지난번에 합의했고 그래서 사실 이 안이 안건으로 올라왔지만 어떻든 오후 논의로 좀 더 모아 갔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얘기하셨습니다.

또 김종민 위원님께서는 합의했으니……

○김종민 위원 폐지까지는 아니어도 어떻게든지 개선에 대한 결론은 내 줘야 되고. 사실은 120일, 60일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국회에 대한 국민 불신, 법안처리 지연 이 문제를 해결 안 하면 여야가 없어요. 지금 내가 보기에는 이게 거의 촛불 직전이에요, 제 생각에는, 선거법 개정문제도 있지만. 하여간 국회의 생산성 문제 이것정리 안 하고 그냥…… 이번에도 소위 상설화도안 하고 법사위도 놔두고 계속 이대로 갔다가는 나중에 욕먹고 강제로 개편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임계점에 다다랐다고, 사실. 이것 어느 정도는 노력을 해 줘야 돼.

○소위원장 서영교 저희가 사실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운영개선소위도 오래간만에 열렸고.

○김종민 위원 이게 여야가 뭔 상관있어, 이게. 어떻게 보면 법안 처리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거든, 여야도 아니고. 지금 상임위원장 권한 어쩌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상임위원장 권한 놔두고 속도만 좀 빠르게 하자 그런 정도인데 그 정도도 합의가 안 될 필요가 없잖아.

○성일종 위원 지금 우리가 법사위에서 처리되 고 있는 게 37일인가 아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김종민 위원** 그건 처리된 것만 놓고 볼 때. ○소위원장 서영교 그건 빨리 처리되는 경우입 니다.

○성일종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쟁점이 없는 것 은 정상적으로 가고 있다라고 논거가 나오는 거 예요. 그렇지 않아요?

○김종민 위원 그런데 제가 양심적으로 법사위 에서 한 세 달 해 보니까 거기에서 잡히는 법안 들이 체계·자구의 법률적 취지에 그렇게 부합하 는 것만 잡히지 않는 게 현실이에요.

○성일종 위원 그러면 그것 쟁점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에 대한 문제지 기간의 문제 는 아니라는 거지요.

○김종민 위원 거기에 기간 들어가 있지요.

○성일종 위원 문제가 없는 것은 37일 정도 하 면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필터링 되고 있다. 정말 쟁점이 되거나 격론이 붙어 있거나 정쟁이 붙어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끄는 것 같은데 그 건 그것대로 풀어야지 이것 기간을 일정하게 그 냥 당겨 가지고 그게 해결된다는 보장도 없다는 거지요.

○**신동근 위원** 지금 문제는 법제사법위원회가 하고 있는, 원래 해야 될 기능보다도 그러니까 체계·자구 심사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문제를 삼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종민 위원 그것은 여야 간 쟁점이면 또 그 래도 봐줄 만한데 위원 개개인의 이해관계가 다 들어가 있다고.

○윤재옥 위원 저도 한 말씀 할까요?

○소위원장 서영교 예, 윤재옥 위원님 말씀 주 십시오.

○**윤재옥 위원** 지금 우리가 논의의 관점을 과연 법이 문제가 있는 것인지 또 운영하는 데 문제가 있는지 이 관점도 한번 짚어봐야 된다고 생각합 니다.

법사위 관련해서 여야 입장이 바뀔 때마다 불

편해 하고 문제 제기를 죽 해 왔습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이게 법의 내용은 지금 우리 현실에 서 법사위의 소위 말하는 체계·자구 심사권을 없앨 것이냐 이런 문제를 논의하는 데 있어서 우 리가 상임위 법안 심사가 얼마나 깊이 있게 또 모든 관련되는 문제들을 다 종합해서 심사되고 있는지 입법 현실을 한번 봐야 될 측면이 있습니

그리고 존경하는 여당 위원님들 말씀이 있었습 니다마는 법사위가 과연 본래의 체계·자구 심사 권을 넘어서, 법에서 부여한 기능을 넘어서 체 계 · 자구 심사권을 빌미로 심사 과정에서 다른 요소가 개입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짚어봐야 된 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우리 입법 현실이 사실 상임위 법안 심사 과정에서, 물론 대부분은 쟁점 없는 법안들 또 문제 요소가 없는 법안들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법안을 처리하면서 몇 건이라도 이 게 고리 요소가 빠져 있거나 또는 법안 간에 충 돌이 있거나 또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거나 또는 정치적 타협으로 인한 법안 심사가 졸속으로 되 는지 이런 것들을 사실은 어느 기능에서인가는 현재 입법 현실에서 한군데서 걸러 주는 기능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법안 심사를 하면서 법사 위 문제가 법적인 문제인지 운영상 문제인지, 운 영상 문제로 풀 수 있는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좀 더 논의해 보고 이것은 운영상 문제가 아니라 법적인 문제라고 판단하면 법을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후에 이런 문제를 좀 더 논의했으면 좋겠고요.

다만 오후에 논의의 효율성을 생각해서 위원장 님께서 소위 활성화 문제를 좀 더 집중적으로 해 서 오늘 결론을 내리고 또 시간이 남으면 법사위 문제를 더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오늘 논의가 안 되면 또 다시 일정을 잡아서 법사위 문제를 다시 논의해서 결론을 내리든지 그렇게 운영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서영교 우선 오늘 저희가 해야 할 의제가 몇 건이지요, 5건인가요?

(「6건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6건, 지금 소위 개선하고 그다음에 법사위 제 도 개선 그리고 세종시 분원 관련한 법안, 인사 청문 제도 개선 그리고 청원 제도 개선 그리고 국회선진화법, 그래서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시작을 했는데요. 조금 더 심도 깊게 고민을 하시고 오후에 다시 속개를 해서 이 부분을 좀 더 할 수 있다면 다 논의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의견을 좁히기 시작하면, 또 첫술에 다 해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 접근을 해내면서 해결을 해 가면 좋 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소위 개선도 조금 더, 지금 우리가 의장님이 내신 안, 다른 의원님들도 내신 안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충실하게 검토해야만 합니다. 검토해 야만 하는데 그 과정이 오늘 다 결론을 내야 된 다 이런 게 아니라서 그 안에 각 소위를 어떻게 만들자 이것까지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소위를 좀 더 다양화한다 그리고 정례 화한다 이렇게 가는 것만도 합의 보면 되기 때문 에 그렇게 가볍게 터치하고.

법사위 부분도 상임위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또 그동안 계속돼 왔던, 3당 대표께서 합의를 하 실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있는 것을 최대한 살려서 법사위 관련한 법안 논의도 좀 확실하게 해서 의견을 모아 오십시오. 모아 오 셔서 그 의견을 접근할 수 있는 부분까지 접근하 고 한 단계 한 단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윤재옥 위원님께서 그런 안을 내셔서 오후에 다시 한번 속개해서 이야기하자고하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도 좀 더 이야기하실 분 있으시면 말씀 주십시오.

○김종민 위원 오후에 얘기하시지요.

○소위원장 서영교 그러면 좀 더 심도 깊게 고 민하시고 의견을 모아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정회했다가 3시에……

저희가 3시로 하게 된 이유가 여야정 국정상설 협의체 논의가 2시에 잡혀서 양해 부탁드리면서 3시에 논의를 하면 어떨까 싶은데, 그렇게 부탁 드리겠습니다.

3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15시09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서영교 의석을 정돈해 주시고 오전에 이어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소위원회 활성화와 법사위 체계·자구심사제도 개편에 대해 논의를 하였습니다. 오후에도 계속해서 이 주제에 대해 논의를 한 후 합의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의결하도록 하겠습니

다.

또한 국회 세종시 분원, 인사청문 제도 개선, 국회 선진화법 개선, 청원 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논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소위 활성화에 대해서 논의를 한 번 더 할까요, 아니면……

○유의동 위원 죽 읽지요, 이것 마지막까지 한 번 읽어야 되는데. 오늘 소위 활성화 가지고 답 이 안 나올 것 같은데.

○국회사무처입법차장 한공식 점심시간에 운영 수석하고 위원님들 이야기한 부분을 반영해서 처 리 가능한 수준으로 저희들이 만들었으니까 이것 을 보시고······

○소위원장 서영교 그러면 소위 활성화에 대해 서 좀 의견이……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지금 만약에 의장님이 제시하신 의견의 큰 취지에 동의하시면, 저희가 수정의견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지금 복사 중에 있고요.

세종시 분원에 대해서 논의하시고 그다음 수정 의견을 한번 봐 주시면……

○소위원장 서영교 그러면 조금 이따가 와서 말씀 주시겠습니까?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예.

○유의동 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운영개선소위 첫 번째 회의인 만큼 지금 여기 상정되어 있는 모든 법에 대해서 일독을 한 후에 앞서 논의했던 소위원회 활성화 관련이라든지 다양한 것들이 의 견이 일정 부분 절충된 부분은 절충된 대로 아직 남아 있는 부분은 남아 있는 대로 다음번 회의에 서 매듭을 짓도록 하고, 오늘은 지금 상정되어 있는 법안에 대해서 충실히 논의하기를 건의 드립니다.

지금 소위 활성화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 위원님들이 국회로부터 다시 좀 설명을 듣고 이해가 완성이 된 후에 논의를 했을 때 훨씬 더 접근점에 도달하는 것이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서영교 예, 그러면 소위 활성화는 아직도 설명할 자료가 좀 더 준비되어야 한다고 하고 또 우리 유의동 위원님의 의견도 있어서 소위 활성화는 그다음 논의를 하고 나서 말씀을 나누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부분은 오전에 좀 논의가 되었으니 사실 지금 의결 보고

가면 딱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저의 생각인데, 지 금 아직 의결정족수도 안 되었고 또 조금 더…… 사실 의견을 접근할 수 있는 부분만 접근해 가도 되겠다는 생각이기는 하지만요.

그러면 우선 그다음 세종시 분원 관련해서 전 체를 한번 훑는 것으로 가고 다시 의견 접근을 좀 하고요.

저희가 각 상임위는 매일 해서 성과를 내자라 고 하면서도 우리 상임위도 그런 모범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내일까지 운영위원회를 좀 할 수 있 었으면 좋겠다 이게 저희들의 안인데요, 그렇게 생각해 두시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의동 위원님!

- ○유의동 위원 예.
- ○**소위원장 서영교** 고맙습니다.
- ○**유의동 위원** 아니요, 지금 묻는 말에 대답만 한 것인데……
- ○**소위원장 서영교** 예, 동의했습니다.

그러면 우선 체계·자구 심사는 그다음에 다시 논의하도록 하고요.

국회 세종시 분원 관련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 겠습니다.

다음, 국회 세종시 분원에 대해 수석전문위원 의 설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께서는 설명해 주십시오.

####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종시 분원 관련 심사 자료를 보아 주시기 바 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이 개정안을 보시면 '국회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에 그 분원을 둔다'하고 '세부적인 것은 국회규칙으 로 정한다'이런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법률적 검토와 더불어 국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가 장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 고 보았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회사무처에서 용역을 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도 용역 예산이 반영되 어 있어서 전번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아마 국회사무처에서 발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페이지에서 기존에 용역 나온 것에 따르면, '국회 세종시 분원 설치의 타당성 연구'용역이었 는데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타당성을 따져 보았 습니다.

정치적 타당성에 대해서는 국정과제라든지 대 선 공통 공약사항, 여론조사 결과 등등으로 볼 때 찬성이 많기는 한데 압도적 다수는 아니라는 점 을 적시를 했었고, 사회적 타당성 측면에서는 지 역 균형발전 효과를 통해 1조 2000억 원 규모의 GRDP가 증가하고 기타 여러 사회적 편익이 존재 하는데, 다만 수도권에서는 지역총생산 감소의 반 대급부라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행정적 타당성 측면에서는 국회와 행정부 간 거리에 따른 행정적 비효율성에 대해서 의원실, 상임위원회 등 기관마다 특성이 다르며 분원 설 치 시에는 새로운 행정 비효율이 발생할 가능성 이 높다는 분석을 해 왔습니다.

경제적 타당성에 대해서는 현재 세종시 부처의 국회출장 비용이 연간 36억 원에서 최대 67억 원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점을 적시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법률적 검토 측면에서는 2004년에 헌법 재판소에서 '관습헌법으로 수도를 옮기는 것은…… 개헌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국회의 본질적 기능이 분원으로 이전하게 되면 그것이 개헌을 통해야만 하는 것인지에 대 해서 좀 논란이 있을 수가 있다는 점을 적시를 하고, 오른쪽에 보시면 안을 몇 개 적시를 했습 니다. 여기에 따라서 그것이 위헌 가능성이 있는 지 여부를 검토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시나리오 네 가지를 예시로 든 겁니다. 용역에서.

첫 번째 안은 예산정책처를 세종으로 이전하고 그리고 예결위원회 회의를 세종에서 개최하는 그 런 안이 되겠습니다.

모든 안이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안은 세종에 소재하는 부처를 소관하 는 위원회를 항상 세종에서 개최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안은 세종 소재 부처 소관 위원회를 모두, 거기에 있는 직원들까지 아예 다 세종으로 이전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4안은 국회 전체를 옮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개헌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런 의견이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서영교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들었 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질문 있으면 질문 주시고요.

- ○정유섭 위원 제가……
- ○소위원장 서영교 정유섭 위원님 말씀 주십시 오.
- ○정유섭 위원 이 내용에 보면 말이지요 '세종 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분 원을 둔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세종특별자 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무슨 내용이 있기 에 이게······
-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그 법에 따르는 게 아니고요. 그 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 ○정유섭 위원 그러면 그 내용에는 국회 분원 그런 내용은 없는 거고요?
-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예, 그렇습니다.
- ○정유섭 위원 그러니까 세종특별자치시에 분원을 둔다고 하는 의미는 이게 처음이군요?
-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예.
- ○정유섭 위원 다른 어디에도 없고?
-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그렇습니다.
- ○소위원장 서영교 세종특별자치시 설치라고 하 는......
-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 ○김종민 위원 세종시가 규정된 거고 그 세종시 내에다가 둔다……
- ○소위원장 서영교 그러니까 세종특별자치시 설 치 등에 관한 특별법은 존재를 하고?
-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그 법에 따라서 세종시 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세종시에……
- ○소위원장 서영교 그 법에 따라 세종시가 만들어졌고 그 특별자치시에 분원을 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법에 없으니 우리가 이렇게 만드는 것이다 이런 얘기라는 거지요?
-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예.
- ○**김종민 위원** 저도 의견 좀 드릴게요.
- ○소위원장 서영교 김종민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 ○김종민 위원 이 문제는 여러 가지 검토의견들이 있는데, 일단 우리가 조금 근본적으로 생각해봐야 될 문제는 행정수도 문제가 해결이 되든 안되든 일단 행정 기능이 대부분 세종시로 지금 넘어가 있어요. 이전돼 있어서 지금 이 상태로 국회와 행정부처의 거리를, 이렇게 한 2시간 이상놔둔 상태로 유지하는 게 지속 가능하냐 이 문제

에 대한 냉정한 판단을 해 봐야 됩니다.

저는 그 점에서는, 궁극적으로 이것이 지속 가능하게 가는 것은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는 이거지요, 세종시를 광화문이나 과천으로 다시 철수시키든가 아니면 국회가 내려가든가 둘 중의 하나는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수도와 관련돼 있는 본질적 기능 문제 때문에 국회의 전체를 이전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었으니, 판단을 해 봐야 되니, 그것은 개헌 이후로 판단하고 일단 상임위 차원의 이전만 시도하자, 이게 이 법에 담겨 있는 내용적 취지거든요,법 내용에 그것은 없지만. 저는 그것은 이번 기회에 결단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게 미룬다고해서 피해갈 수는 없어요.

여기 효과에 보면 경제적 효과에 몇십억 경제적 손실 얘기만 돼 있는데, 36억에서 67억인데 사실 이것은 그냥 차비나 진짜 순수 비용의 문제이고 핵심은 시간과 업무 효율성의 문제인데 2만회거든, 2만회. 공무원들이 지금 국회로 출장 나오는 게 2만회인데 2만회에 고스란히 하루에 4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거예요. 이것을 대한민국의 고위급 공무원, 국회에 오는 공무원들은 하급공무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세종시는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세종시는 5급이하, 4급이상은서울출장소 딱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세종시공무원들의 기본적인 지금 풍속이에요. 이 상태를 지속하는 것은 나중에 국회한테 큰 부담이다.

그래서 저는 세부안은 좀 여러 가지로 조정이 가능하지만 기본적으로 국회분원 설치 문제는 빨리 결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입니다. 〇소위원장 서영교 김종민 위원님 말씀 있으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면 이 개정안은 그 분원을 둔다라고 하는 내용이 한 가지이고, 두 번째 분원의 설치,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분원을 둘 것이냐? 예산처와 예결위 회의가 거기로 간다, 세종 소재 부처 소관 위원회가 세종에서 개최된다 등 이렇게  $1 \cdot 2 \cdot 3 \cdot 4$ 안 정도가 있는데 이런 안은 지금 저희가 정할 필요가 없이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으면 지금은 1번 정도로 하고, 규칙으로 정한다로만 하고 이내용은 국회규칙에서 다시 만들어 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국회규칙까지 또 여기서 합의해야 되는 건가요?

○국회사무처입법차장 한공식 지금 참고로 국회

사무처에서는 관련 용역 2억이 올해 반영이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운영위 회의 때 위원님들께서 '용역을 빨리 발주하라' 말씀을 주셔서 다음 주 정도에 한 1억 원 규모로 국회분 원을 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 인지에 대한 용역을 발주할 겁니다.

그래서 어떻든 그 용역과 별도로 분원에 대한 근거는 국회법이든 어떻든 다른 제정법을 통해서 도 만들어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유의동 위원** 질문이 있는데요. 지금 용역 말 씀하셨는데 이게 2017년도에 행해졌던 용역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 거지요, 그 용역이?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나요?

○**국회사무처입법차장 한공식** 저희들은 또 다른 결과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고 판단해서 사실 이런 부분을 더 구체적으로, 운영위에서 위원님 들이 법안 심사하면서 논의 좀 해 줄 것을 저희 들은 기대를 했었고요. 그런데 사실 그 전제가 되고 난 뒤에 용역을 하면 더 좋은 용역이 될 것 으로 판단했는데 지금 상황이 같이 가는 쪽으로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용역은……

○김종민 위원 그것 제가 보완해서 말씀드릴게 요.

지난번 17년 용역은 5000만 원짜리로 기획실 예산으로, 그러니까 약간 전용해서 한 용역이거 든요. 그래서 그것은 쉽게 얘기하면 여론, 우리 국회 내부와 외의 이 문제에 대한 타당성 판단의 분위기를 종합해서 판단하는 그런 자료 성격이 강한 거고 이번에 국회의 본예산으로 책정돼서 집행되는 용역은 옮긴다고 했을 때 어떤 형태로 옮기는 게 가능한지에 대한 실질적인 연구를 해 서 국회에다가 제안해서 국회규칙을 만들 때 그 용역을 가지고 규칙을 만들 수 있게 근거 자료를 만들어 내는 그런 용역이지요.

○유의동 위원 그 용역은 옮긴다는 전제가 되는 용역인 건가요, 그러면?

○김종민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그 용역을 국 회법이 개정된 다음에 용역을 집행하겠다고 지금 까지 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국정감 사 때 말씀드린 것은 국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은 어차피 별도의 국회법 논의사항이 고 세부적인 문제는 그 이후에 국회규칙 때 미리 준비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미 잡혀 있는 예 산이니까 빨리 집행하자 해서 얘기를 한 거지요. **○유의동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3페이지 4안을 보면 '개헌을 통해 국회 전부를 세종으로 이전'이라는 게 있는데 개헌이 되어야 만 국회 전부 이전이 가능한 건가요?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예, 2004년에 헌법재판 소……

○**유의동 위원** 국회는 대한민국 수도에 존재해 야 된다라는 규정이 어디에 있나요?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 래서 관습헌법이라고 그때 헌법재판소에서 했기 때문에 수도에는 행정부와 입법부가……

○**유의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습헌법상 서울 이 수도라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국회가 수도에 있어야 된다까지 관습헌법이 포섭하는 건 아니잖 아요?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예, 그것은 아무도 확실 한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유의동 위원** 그러니까 개헌을 통해서만이 국 회 전부를 세종으로 이전할 수 있다 이 내용은 아니네요.

다만 지금 걸림돌은, 제가 보기에는 분원은 사 실 현실적으로 대안이 될 수가 없고요. 실질적인 효과나 내용적인 면이나 재정적인 면이나 행정적 인 면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분원은 설득력을 얻 기가 어렵고 분원을 통해서 오히려 문제점을 더 키울 가능성이 크고, 다만 전부를 이전하느냐 아 니냐의 판단만이 남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2017년도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어떤 의 견도 압도적 다수가 나타나지 않고 팽팽하게 맞 서고 있는 상황에서 이 안을 더 논의하는 게 실 질적인 의미가 있을는지는 잘 모르겠고, 향후에 연구용역을 기 예산에 세워서 반영이 된다면 그 내용을 보고 평가하는 게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종민 위원 아니요, 제가 잠깐만요. 이것 약 간 사실관계에 오류가 있는데 개헌이 안 되면 국

회 이전 문제는 논의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 까 말씀에 관습헌법으로 헌법재판소 판례가 만들 어질 때 그 판례 내용에 수도의 정의를 했어요. 수도의 정의는 '국가의 중추기능, 대통령실과 국 회와 대법원이 있는 곳을 수도라 한다' 이렇게 판례로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판례를 뒤집 어야 되는데 그건 개헌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현 상태로 가면 이대로 쭉 가야 됩니다, 그냥. 방법이 없어요. 국회 전체 이 전 논의는 할 수가 없고 그러면 전체 이전 논의, 개헌으로 하기 이전 단계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은, 개헌 문제 하려면 이건 오래 걸리니까, 기본적으로 상임위 차원의……

주로 행정부처하고 얘기하는 게 상임위지 본회의는 사실 많지가 않잖아요. 중추기능은, 의결기능은 본회의니까 본회의는 여기 수도에 놔두는게 헌법재판소 판례니까 놔두고 상임위의 기능은헌법에 귀속이 지금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빨리 옮겨 줘서 행정 효율성을 기하자 이게이 분원 설치의 취지예요. 그래서 지금 전체를옮기는 논의를 해 보자 이것은 헌법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 ○정유섭 위원 저도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 ○소위원장 서영교 저도 사회자로서 한 말씀…… 어려운 논의인데요, 어떻든…… 정유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정유섭 위원 연구용역 사항 보면 타당성 검토에서도 장단점이 아주 그냥, 50 대 50 정도 되고요, 법률적 검토에서도 하여간 중추적 기능은 못옮긴다는 얘기이고, 그래서 결론에 가면 임시 고육책으로, 차선책으로 분원을 설치하는 것을 고려할 만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는 분원이라는 개념은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국회분원을 두는 나라가 전 세계에 있습니까? 국회라는게 수도에 있는데 또 다른 분원을 설치하는 나라가, 사례가 있어요? 그것 한번⋯⋯
- ○국회사무처입법차장 한공식 사무처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분원을 두는 나라는 없습니다, 세계어느 나라에도.
- **○정유섭 위원** 없지요?
- ○국회사무처입법차장 한공식 다만 행정부하고 입법부를 별도로 두는 데는 남아프리카공화국 같 은 경우에 별도로 두고 그런 건 있지만 국회 기 능을 나누어서 분원 개념으로 두는 데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종민 위원 아니,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예외고 전 세계에서 행정부처하고 국회가 떨어져 있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 ○국회사무처입법차장 한공식 아니, 국회의 분 원 개념으로 두는 말씀을 하셔서……
- ○**김종민 위원** 분원이 없는 이유가 다 행정부 옆에 국회가 있기 때문에 분원이 없는 거지요.
- ○**국회사무처입법차장 한공식** 그러니까요.
- ○소위원장 서영교 그러면 그것을 명확히 해서, 행정부와 입법부가 떨어져 있는 나라는 어디가

있습니까?

- ○**국회사무처입법차장 한공식** 지금 말씀드린 남 아프리카공화국도 있고요.
-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지금 자료를 나눠 드리 는데요 몇 개 나라는 좀 떨어져 있는 나라도 있 습니다.
- ○김종민 위원 우리가 남아프리카공화국 같은 특수한 나라가 될 이유는 없잖아요. 사무처에서 노력 많이 했네요, 자료도 만들고. 그런데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셔야지.
- ○국회사무처입법차장 한공식 저희들도 되는 방향으로 해서 추진했을 경우에 어떻게 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 ○정유섭 위원 예를 들어서 독일을 보면 행정부는 본원, 분원 있는데 의회는 분원 설치하지 않았다고 돼 있네요.
- ○**김종민 위원** 그건 행정부 옆에 있으니까 분원을 설치할 이유가 없지요.

그런데 그걸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국회의 일종의 책임이거든요. 지금 이 상태로 2만 회를 출장 오는 것, 특히 4급 서기관급 이상 고위공무 원들의 시간을 이렇게 뺏는 게 과연 얼마나 지속 가능할 거냐? 아니면 나중에 고위공무원들이 국 회 출장 힘들다 이렇게 항의하게 되거나 이게 이 슈가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실제 2만 회 라는 게 간단치가 않아요. 다 고위공무원들입니다.

- ○소위원장 서영교 우선 김종민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오늘 이 자료를, 해외 사례를 찾아본 경우처럼 입법부와 행정부가 분리되어 있는 곳이 남아프공화국이라는 건가요?
- ○**국회사무처입법차장 한공식** 예, 그렇습니다.
- ○소위원장 서영교 남아프리카공화국이고 여기 스리랑카 뭐 이런 데도 그렇다는 건가요? 어떻든 다른 데는 다 입법부, 행정부가 붙어 있다는 건 가요?
- ○국회사무처입법차장 한공식 예, 입법부하고 행정부 같이 있다고 봐야지요, 다른 데는.
- ○소위원장 서영교 저는 공부를 조금 더 해야 될 거 같아서……
  - 이철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 ○이철희 위원 제가 과방위 법안소위 때문에 좀 늦게 왔는데요. 이게 제 기억에 2006년인 것 같은데 행복도시 건설하고 공공기관 이전하는 것에 여야 합의를 했잖아요. 그 당시 행정부의 일부가

내려가게 된 것이 여야 합의로 가능해졌던 거잖 아요. 그러면 그때 그 취지가 존중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 여야 합의로 행정부 일부 가 내려가서 그 결정의 연속선상에서 이러이러한 필요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하면 저는 이 문제도 그런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은가 싶습니다.

이게 만약에 심각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다수결 에 의해서, 밀어붙여서 됐다 그러면 이 문제가 별개로 논의될 수 있습니다마는 국회가 합의해 서, 여야가 합의해서 행정부 일부가 내려가서 세 종시를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세종시가 온전한 기능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현재 현실적 으로 할 수 있는 조치가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저 는 당연히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가는 것이 우리가 여야 합의로 결정한 사안이고 두 개 가 떨어져 있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부작용이 상 당하다. 원래 우리가 합의로 처리했던 결정을 존 중한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으로라도 이 부작용을 줄여 주는 게 맞는 것 아 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별개로 논의할 게 아니라 그런 관 점에서 본다 그러면 어느 규모로 가는 건지는 또 여야 간에 논의하고 합의해야 되겠습니다만 그 명칭이 뭐가 됐든 저는 그때 그 결정이 좋은 결 정이든 나쁜 결정이든 상관없이 그것에 의해서 현재까지 왔고 또 그 결정에서 일부 부작용이 생 기고 있다 그러면 시정해 주는, 교정해 주는 조 치들이 있어야 되는 게 우리가 원래 내렸던 결정 에 합치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때 여야 합의로 그런 결정을 해 놓고 지금 와서는 또 그런 부작용이 있든 없든 상관없다 이 래 버리면, 하나의 결정이라는 게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국회라는 것도 일종의 연속적인 기 관이기 때문에 국회의 결정이었는데 지금 와서 나 몰라라 할 일은 아니지 않나 싶어서 저는……

제 기억이 맞다면 그때도 어느 부처가 얼마나 내려가고 공공기관도 혁신도시 만들어서 얼마나 내려가고 하는 것도 여야 합의로 처리했던 기억 이 있어서 국회가 가더라도 세밀하게 안을 짜면 얼마나 내려갈지는 협의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 걸 분원이라고 하든 출장소라고 하든 뭐가 될지 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건 맞지 않나 싶습니다.

구체적인 형태에 대해서는 조금 더 협의를 통 해서 여야가 합의로 풀어야 되겠습니다만 문제의 식은 원래 우리가 세종시 건설하기로 한 여야 합 의에 충실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 제가 들어도 약간 반복되는 느낌이 있는데, 그래야 되 지 않나 싶습니다.

○김종민 위원 수석님, 제가 항의 비슷하게 말 씀드리면 이 자료를 위원님들에게 약간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게 만드셨어요.

지금 정치적 타당성에서 50% 찬성, 45% 반대 이 여론조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심각하게 고 민하지 않은 일반 여론조사가 정치적 합의의 핵 심은 아니고 지난 5개 정당의 대선 공약이에요, 다. 국민들하고 다 약속한 겁니다, 5개 정당이. 그게 제일 정치적 타당성의 핵심인데 그건 쏙 빼 놓고 50 대 45 이 여론조사만 해 놓으면 이것 갖 고 어떻게 심의하는 데 활용이 되겠습니까?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거기에 대선 공통 공약 사항도 일단 적혀 있습니다.

○김종민 위원 그러니까 5개 정당 이름을 다 써 놓으면 관련된 위원님들이 환기가 되는데 대충 써 놓고 뒤에 50 대 45만 이렇게 해 놓으니까……

선거 때는 하겠다고 하고 선거 끝나면 또…… 이게 지금 매번 반복되고 있는 거거든. 물리적으 로 불가능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상임위 정도만 하자는 건데 그거를 언제까지 안 할 거예요?

○소위원장 서영교 김종민 위원님 말씀 감사하 고요

5개 정당 대선후보들의 공통 공약사항도 갖고 있는 게 있으면 자료를 한번 주시지요.

하여간 있으면 제공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의견을 좀 모아 가도록 하겠습니 다.

정유섭 위원님.

○**정유섭 위원** 위원장님, 우리 당의 위원님들이 지금 안 계셔 가지고 저 혼자 이거를 결정하기가 어렵고 하여간 오늘은 제가 몇 가지 의문점만 제 기한 겁니다.

다른 나라에는 없는, 국회가 분원을 설치한 나 라가 전 세계에 하나도 없다 하는 문제 하나하 고, 이게 타당성이나 법률적 검토상에 아주 백중 세의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 분원 설치하는 게 옳다 그르다에 대한 저기가 없다, 그러니까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서영교 신동근 위원님 말씀 주십시

○**신동근 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역 분권의 균형적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행정부를 이전했던 건데 어쨌든 그 정신, 그다음 에 또 하나는 그리 상당수가 이전해 가서 행정적 낭비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또 각 당의 공 약이기도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전하는 걸 하되 그 내용과 방식에 대해서는 시기도 점진적으로 하고 방식도 충분히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 입니다.

○정유섭 위원 KTX 국회의사당역 하고 KTX 세종역 하면 굉장히 많이 해소가 돼요.

○**이철희 위원** KTX가 여기로 온다고?

○정유섭 위원 KTX 국회의사당역하고 KTX 세종역을 신설하면 된다고.

○**이철희 위원** 노선 만들어야 되는데.

○정유섭 위원 그러니까 노선 하나 만들어서.

○이철희 위원 새로 만들자고?

○정유섭 위원 여기도 하나 만들고 거기도 하나 만들고.

○소위원장 서영교 신동근 위원님 죄송합니다. 뭐라고……

○신동근 위원 테슬라 만든 그 친구가 지하 뚫는 것 있잖아요. 그것 한번 뚫어 가지고…… 그냥 하는 소리입니다.

○정유섭 위원 그냥 하시는 소리예요. GTX 세종·국회의사당 역을 만들면 된다는 거지.

○**유의동 위원** 다음 논의로 넘어가시지요.

○소위원장 서영교 우선 여기에 보니까 개정안 이 아주 간단하기는 하네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에 그 분원을 둔다'라고 하고 내용들은 어떻든 용역을 통해서 좀 더 살펴보고 그런 속에서 '분원의설치와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박경미 위원 저 한마디만 보태고 갈게요.

○**소위원장 서영교** 말씀하세요.

○박경미 위원 여기 지금 1안, 2안, 3안, 4안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통은 1안 또는 2안 또는, 보통 오어(or)로 연결이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2안 세종 소재 부처 소관 위원회를 세종에서회의를 개최하다가 위원회를 세종으로 이전하고 전부 이전하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나가는 안인 것 같아서요, 2안에서 3안으로……

그러니까 이게 오어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2안에서 그다음에 좀 더 나가서 3안, 4안 이렇게 점진적으로 옮겨 가는 안이 아닌가요? 그렇게 이해

되는데……

○**소위원장 서영교** 세종 소재 부처······

○박경미 위원 물론 1안에서 4안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1안을 거쳐서 4안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것들이 독립적인 안이 아니고 점진적인 단계안인 것 같아서요.

○소위원장 서영교 그렇지요. 이 단계를 다 갈 수도 있고요.

○박경미 위원 한번에 4안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소위원장 서영교 다 가지 않고 이 중에 일부 만 1안만 할 수도 있고 2안만 할 수도 있고……

○박경미 위원 만약에 2안 상태에서 계속 머물 러 있을 수도 있고……

○소위원장 서영교 그럼요.

○박경미 위원 3안 상태에서 계속 머물러 있을 수도 있고 4안으로 갈 수도 있고……

○소위원장 서영교 그런 내용을 국회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김종민 위원 그러니까 2안 수준이 어떤 수준이나면 지금 국정감사 할 때 세종시 가서 국정감사 하거든요. 그걸 상임위에서 일상적으로 자주하자 정도가 2안, 청사 빌려서 하지 말고 국회상임위 회의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하자.

그리고 나중에 개헌이 되면 본격적인 논의를 해서 결판을 내자 이런 수준인데 그 정도만 해도 세종시에 있는 부처의 상임위들은, 특히 고위급 공무원들이 지금 서울로 자주 오는 행정 비효율 을 없애는 게 되게 큰 거예요.

○소위원장 서영교 좋은 말씀이십니다.

조금 더 보자면 분원을 설치해서 한다. 그런데 그 분원 설치는 예를 들면 1년에 한 번 있는 예결위를 세종시에서 개최한다 이런 내용 정도로 어떻든 분원 설치의 의미를 둘 수 있다 이런 게 1안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결위 할 때 모든 부처에서 다와서 여기서 있는 것을 세종시에서 개최하게 되는 거지요. 이런 정도의 분원을 설치함으로써 많은 비용들을 절감하고 또한 권한의 일정한 분산효과로 지방분권, 국토균형발전, 분권의 역할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너무 무리하게 하는 것 보다는 이런 안이나 아니면 두 번째 안 정도의 일부 이렇게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정 할 필요 없이 국회규칙으로 논의할 수 있지 않을 까. 그래서 분원 설치한다라는 정도 합의만 우선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한 가지만, 이 내용이 아까 가지고 오 라는 자료니까 한번 보시지요. 그러고 나서 이야 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유섭 위원 그런데 이분들 전부 충청도 가서 발언하신 거네. 심상정, 안철수, 유승민, 홍준표, 추미애 전부 충청도 가서……

○유의동 위원 지금 나눠 주신 자료를 봤는데 문재인 대통령, 정세균 의장, 추미애 대표, 심상 정 후보 같은 경우에는 분원을 말씀하신 거고, 다른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국회 자체를 전부 이 전하겠다는 취지예요.

그러니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옮기 든지 안 옮기든지에 대한 문제가 있어야지 분원 은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서 낭비적 요소가 크기 때문에 개헌의 논의를 앞당 겨서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찾으셔야지, 그냥 분원 규모가 100명이니 200명이니 이런 논의를 가지고 이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생 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논의로 접어들 것이 아 니라면 저는 이 논의는 여기서 갈음하는 게 좋겠 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종민 위원** 죄송한데요, 제가 한 가지만 질 문을 드릴게요.

만약에 개헌이 안 되면 2만 회, 고위 공무원들 이 서울 국회까지 오는 이 상태가 계속 꾸준히 갈 수 있다고 판단하시나요? 만일 우리 국회가 그렇게 판단한다면 국회 책임으로 갈 수가 있는 데 저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지금 얼마 안 돼서 그렇지 이 상태를 유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수도가 이전 이 안 되더라도 언젠가는…… 만약에 행정수도는 안 된다, 이 결말이 나잖아요? 그러면 수도가 안 되면 적어도 이 행정 비효율이라도 해소해야 된 다, 그때 결론이 날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다 옮 기든지 일부 옮기든지 언젠가는 해야 돼요. 그것 을 지금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문제는 놔둔다고 그래서, 서울하 고 세종하고 분리된 상태를 항구적으로 지속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지요. 그때 가서 개헌 얘기 해 보고 안 되면 계속 이대로 가자, 이게 가능한

안이면 저도 우리 유 위원님 말에 그때 가서 보 자 이렇게 찬성해 줄 수 있는데 그때 가면 그러 면 일부라도 옮기자, 이게 결론이거든. 수도 못 옮기면 일부라도 옮기자 이게 그때 결론이에요. 안 옮기고는 못 갑니다, 절대로.

○유의동 위원 지금 저한테 질문하신 거예요? 제가 답을 해야 되나요?

○김종민 위원 아니,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유의 동 위원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전달될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조금 보완……

○소위원장 서영교 김종민 위원님 감사합니다.

우선 이 안에서 다른 후보는 다 옮겨야 된다라 고 하는 거고 또 일부 후보는 분원으로 가야 된 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공통분모는 일 부를 옮기는 거지요, 아니면 다 옮기든지 둘 중 의 한 개라고 하는 게 내용으로 정리되는 것 같 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의견 접근이 어려워서 의견 접 근을 위해서 이 부분을 좀 더 이야기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고 의견 접근이 어려우니 다 시 이 내용 접근은……

○이철희 위원 저……

○소위원장 서영교 의견 있으십니까?

○**이철희 위원** 여기서 계속 답을 안 내고 다음 회의를 해서 답을 내자 이런 뜻입니까?

○소위원장 서영교 우선 우리가 그다음 것까지 훑어보고 다시 이 내용을 건드려서 이야기하자는 겁니다. 앞의 것들도 그렇게 됐습니다.

○이철희 위원 아니, 의견 수렴하는 것도 필요 하다면 공청회를 해 보든지 이렇게 다양한 방법 을 통해 우리가 여론 수렴을 하거나 소통을 하는 방법을 … 우리끼리 자꾸 갑론을박한다고 답이 나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공청회를 한 번 해 보자든지 아니면 용역을 줬는데 또 운영위 차원에서 제대로 된 용역을 주자든지 이런 게 있 어야 되지 않을까요?

○**유의동 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가 용역을 준다 는 것 아니에요, 그 예산을 수립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용역을 보고 다시 논의해도 늦지 않 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

○**이철희 위원** 중간에 공청회 같은 것 한번 하 지요.

○소위원장 서영교 그러면 용역 안과 공청회 안 이 나왔습니다.

○김종민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용역 하는 게 좀 약간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요, 지난번 기획조정실 용역 결과가 옮기는 게 타당하다는 게결론이에요. 그래서 옮기는 걸 결정해 줘야, 이분원 결정을 해 줘야, 어떻게 옮길지에 대한 용역이 이번 2억 용역이거든.

지금 이 프로세스였는데, 타당하다고 용역이 나왔는데 아무런 법적 조치를 안 하고 있는 거예 요. 그리고 또 용역을 하자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아니다, 일단 분원 결정은 입법 조치를 하고 어떻게 옮길지에 대한 것을 용역에서 검토 해 보자 이게 지금 흐름이거든.

○정유섭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서영교** 정유섭 위원님.

○정유섭 위원 김종민 위원님 말씀 알겠고요, 이게 오늘 어느 정도 결론이 나야 이번 예산, 2 억짜리 용역이 있나 보지요?

○김종민 위원 그것은 상관없어요, 이미 통과된 거고.

○정유섭 위원 그런데 하여간 그 예산은 들어가 있는데 근거가 없는 거잖아요?

○김종민 위원 예.

○정유섭 위원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아까 위원장님하고 얘기한 게 원래 인사청문제도 개선, 국회선진화법, 소위원회 활성화, 여러 개를 다 한번 일독하는 차원에서 오늘 하고 결정은 낼수 없고 조금이라도 이의가 있는 것은 다음번에한 번 더 하자 했으니까…… 지금 곽상도 위원 오셨습니다마는 아까는 우리 당 위원 중에 나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일단 독해는 했고 김종민위원 얘기도 충분히 들었고 다른 위원님들 얘기도 들었으니까 오늘 이렇게 일독해서 넘어가고 다음번에 결정하는 것은 할 수도 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서영교 오늘 우선 이것을 한번 일독하고 대신 그 조건은 내일 한 번 더 운영위원회를 해 가지고 이 부분을 결정짓자 이렇게 된 거 거든요.

그런데 오늘 마저 한번 돌고 나서 이야기해서 마무리를 지어 갈 수 있으니까요.

우선 이철희 위원님, 공청회라도 좀 하자라고 하게 되면 이 결정이 어떻든 미뤄지게 되는 거거 든요. 그래서 공청회 안을 내셨는데, 용역은 들어 가게 될 것이고요. 공청회 의견을 한번, 그것도 안으로 올라왔으니까 좀 더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민 위원 일단 오늘 내에 최종 합의를 시 도해 보고……

○소위원장 서영교 예, 그렇게 해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다음에 다시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은 인사청문제도 개선에 대해서 수석 전문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제도 개선 심사 자료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개관 표로서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안들이 들어와 있는데요, 그래서 구분도 약식으로 하더라도 6페이지에 걸쳐서 있 습니다. 9개 사항으로 나누어서요.

첫 번째 사항은 인사청문회를 분리해서 실시하 자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다 보면 윤리성 검증에 너무 치중해서 업무능력 검증이 제대로 안 되는 측면도 있기때문에 윤리성 검증과 업무능력 검증을 분리해가지고 실시하는 안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윤리성 검증과 업무능력 검증을 분리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따로 구성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같은 위원회에서 그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한 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윤리성 검증만 따로 할 것인지여러 가지 방안들도, 다른 개정안이 들어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윤리성 검증과 업무능력 검증의 영역이 명확하게 구분될 수 없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그리고 윤리성 검증을 먼저 한다면 흠결이 발견되었다고 할때 어느 정도의 흠결로서 윤리성 검증에서 끝내고 정책 검증으로 안 들어갈 것인지 등등의 여러가지 문제는 있을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안에서 윤리성 검증 인사청문회는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하고 또 인사청문위원이 인사청문회 관련으로 알게 된 정보에 대해서는 주의의무를 주고 이를 위반 시 국회법에 따라 징계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사항으로는 국회의 자료제출 요 구권을 확대·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첫 번째 사항은 법 정 기본 제출서류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기본 서류 5종, 그러니까 직업·학력·경력·병 역신고사항 등등을 청문회 대상이 되면 반드시 내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사실상 청문회를 하면 위장전입 등등을 보기 위해서 주민등록 이전내역, 금융 관련 자료, 국민연금 납부내역 등등도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이렇게 공통적으로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법정화해서 아예 처음부터 제출하도록 하려 는 그런 개정안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어느 정도로 확대할 것인지가 논의 의 주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청와대 고 위공직 임용배제 7대 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기초자료 등으로 할 것인지 등등 구체적인 사항에 들어가서는 여러 가지 안들이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개인정보ㆍ금융거래정보 자료 요구 강화를 위한 타법 적용 배제인데, 개인정보 나 금융거래정보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면 거부당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타법에 의해서 거기서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아예 이 법에서 타 법 적용을 배제하자는 개정안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적용배제 법률을 결정함에 있어 서는 인사청문제도의 내실화와 더불어서 개인의 사생활 보호법익을 잘 비교형량하는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타법 적용 배제 방식 외에 해당 개별 법률에서 직접 개정하는 방식도 검토 해 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사항으로 자료제출 기한 단축과 기한 내 미제출 시 제재를 강화하는 안들이 들어와 있 습니다. 현재는 자료제출 기한을 5일 이내로 하 고 있는데 이를 즉시제출 또는 2일 이내 등으로 하고, 기한 내 미제출하면 해당기관 경고를 하도 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제재를 더욱 강화하자는 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현재는 위원회 의결 또는 재적의 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자료제출 요구를 할 수 있는데 개별 의원 차원에서도 자료제출 요구 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는 인사청문 자료의 목적 외 사용금지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이 들어와 있습니 다.

여섯 번째는 직계존 · 비속 중 피부양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재산신고사항을 지금은 고지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을 폐지하자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현재 공직에 있는 사람들 이 직계존 · 비속 중 피부양자가 아닐 경우에는 고지 거부를 할 수 있는데 이런 고지 거부를 해 온 경우까지도 고지 거부를 청문회에서는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등은 검토할 필 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인사청문대상을 확대하자는 안들이 많이 들어 와 있습니다. 현재는 65개 공직에 걸쳐서 인사청 문대상이 되어 있는데 이를 확대하자는 안을 보 면 국민권익위원장, 국가보훈처장, 대통령비서실 장, 미국·일본·중국·러시아 4강 대사 등을 포 함해서 인사청문대상을 확대하자는 안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는 어떤 기준, 장관급 이상이라든 지 여러 가지 기준을 설정해서 심사할 필요가 있 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네 번째 인사청문기간 연장은 현재 전체 기간이 20일인데 이를 30일로 연장하거나 위원회 의결로 연장하거나 이러한 취지의 개정안들이 들 어와 있고요.

다섯 번째로 인사청문회가 지금은 인사청문특 별위원회를 구성하든지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서 하든지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다 소관 상임위원회로 일원화시키는 그런 안이 들어와 있 습니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같이 감안할 필요 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증인 출석 요구권한 강화 방안으로서 동행명령 및 소환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안이 들 어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증인 등 증거조사 실시 요건을 지 금은 위원회 의결로 하는 것을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도 할 수 있도록 하는 완화된 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은 공직후보자가 거짓진술을 했을 경우에 처벌규정이 현재는 없는데 관련 규정을 만들자는 그런 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입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할 경우에 현재는 정부에서 재송부를 하고 그래도 하지 못 할 경우에는 임명권자가 임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이러한 규정을 삭제하자는 안이 들어

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위원회에서 의결하면 본회의로 보내서 본회의에서 보고 후에 임명권자에게 송부 하는 것인데 이를 본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그런 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사항으로 첫 번째 공직후보자 변경권고 또는 임명동의안 철회 근거도 마련하려 는 안이 들어와 있고, 두 번째로는 3개 이상 인 사청문회를 동시에 개회될 수 없도록 하는 안이 들어와 있으며, 세 번째로는 당선 즉시 임기 개 시되는 대통령, 이번과 같은 경우인데 이때는 국 무총리가 없거나 아니면 전 정부의 국무총리이기 때문에 국무총리후보자의 추천으로 지명하는 국 무위원후보자를 인사청문대상에 포함시키는 안으 로 입법 미비를 보완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권 신설로 국가정보원법에 국가정보원장도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개정을 하면서 당연히 국가정보원장도 청문회 대상이 되도록 하려는 안 이고.

다섯 번째로 정무장관도 신설을 가정해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더불어서 여기에서 정무장관 직이 신설되면 정무장관은 인사청문대상에서 제외해 주도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공직후보자가 연임할 경우에 인사 청문을 지금은 거쳐야 되는데 어느 경우에는 다 른 법률에서 연임할 경우에 인사청문을 생략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인사청문회법 등에서 인사청문 제도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들어와 있습 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서영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일단 몇 분 의원님들의 법률안 정도 될까 요?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58건의 개정안을 요약한 것입니다.

○소위원장 서영교 위원님들 나눠 드린 의사일 정에 보면 58건의 인사청문 개정안이 들어와 있 네요. 다양한 의원님들의 내용이 그동안 운영위 가 논의가 안 돼서 밀려 있었던 건가요?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저희 위원회에서 일단은 심사하고 의결까지 못 갔기 때문에……

○소위원장 서영교 그전에 그러면 심사를 계속 했던……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전반기에 인사청문제도 개선소위가 있었습니다. 그때 한 번 회의를 열어 가지고 조금 논의를 하셨는데 그때 의결하고 이런 사항들은 없었습니다.

○유의동 위원 그때 당시에 접근된 안, 아직 접 근되지 않은 안 이런 구분이 되어 있나요?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그렇게 확실하게 구분하고 그러지는 못하고 개괄적으로 스크리닝하는 그런 조치만……

○유의동 위원 위원장님, 제가 계속 질문해도 될까요?

**○소위원장 서영교** 예, 말씀하십시오.

○유의동 위원 이게 이 정도면 거의 인사청문회 법 전면개정 수준 아닌가요? 어떤가요, 그렇지는 않나요?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윤리성 검증하고 업무능력 검증 이런 것을 분리하는 것은 상당히 큰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유의동 위원 이 정도의 사안이면, 청문회를 하신 적이 있나요, 이것 관련해서?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이 법안 청문회 말씀이 신가요?

○유의동 위원 예, 인사청문회법 개정과 관련돼 서.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최근에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의동 위원** 죄송합니다, 공청회.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19대 국회에서 공청회 한 번 한 적 있습니다.

○유의동 위원 19대 국회에서 공청회 한 결과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예, 있습니다.

○유의동 위원 그것을 저희들한테 주실 수 있나 요?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의동 위원 그것을 참고해서 어느 정도, 어 차피 지금 의결정족수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소위원장 서영교** 그렇습니다.

○유의동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지금 바로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찾아보겠습니다.

○소위원장 서영교 바로 줘도 뭐 내용을 봐야지 요.

○유의동 위원 저는 19대 자료를 기반으로 하되 지금 이 문제야말로 공청회를 한 번 거쳐서 우리 가 이 부분에 대한 전문가 의견도 듣고 숙의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한 보완이랄까 개선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필 요나 요구들은 많이 있었는데 어떤 방향성이 정 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가 공히 갖고 있는 문제인식이니까 이 부분에 대 한 공청회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를 드 립니다.

○이철희 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소위원장 서영교 이철희 위원님이 '하시지요' 그러셨나요?

○이철희 위원 예.

○소위원장 서영교 이철희 위원님의 동의가 들 어왔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사실은 지난번에 인사청문소 위에서 접근했던 것들이 있을 텐데 그 내용도 한 번 더 봐야 하고, 그다음에 청문회 했던 자료도 있으니 한 번 더 검토하고, 그리고 또 이 내용이 지금 총망라되어 있는 내용이라, 사실은 이 내용 외에도 또 우리 원내대표께서도 수시로 이야기했 던 내용들이 있고 그래서 위원님들 괜찮으시면 이 내용은 우선 중요한 내용이고 시급을 다투기 보다는 중요하게 심도 깊게 봐야 하니 공청회 자 료를 한 번 더 보고 공청회를 한 번 더 할 것인 가에 대한 의견들을 다시 한번 모은다라고 하고 지금은 전체를 죽 스크린했다라고 하는 형태로 넘어가서 다시 논의하는 게 어떨까요?

○유의동 위원 예.

○**소위원장 서영교** 그렇지만 혹시 또 이야기하 실 분 있으면 말씀 주십시오.

그러면 이 부분은 사실은 지난번에 원내대표들 께서 논의하시면서 이와 관련한 인사청문소위, 운영개선소위 하에 소소위를 만들어서 좀 집중적 으로 논의하자 이런 말씀도 있으셨습니다. 그래 서 저희 원내수석들 간에 논의를 해서 이 부분이 새로운 공청회가, 사실은 상황이 좀 바뀌었기 때 문에 19대랑 좀 달라졌기도 했고 새로운 공청회 를 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모으는 형태로 그렇 게 해서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 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넘어가는 것으로 하 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들 안건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다음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국회 선진화법에 대해 수석전문위원 설

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회 선진화법 관련 심사 자료를 봐 주시기 바 랍니다.

1페이지에 개관이 되어 있습니다.

선진화법은 지금 표에 나와 있는 여섯 가지 정 도로 요약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사항이 국회의장 안건심사기간 지정요 건을 매우 러프한 상태에서 상당히 타이트하게 요건을 규정한 것이 선진화법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안은 들어온 바가 없습니 다.

다음, 두 번째는 위원회 안건조정 제도인데요. 이것은 소수파를 위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회에서 일종의 여야 동수, 제1교섭단체 소속 위원과 제1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위원을 동수로 각각 3인 씩 해서 6명으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견 조정이 필요한 안건 등을 대상으로 심사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현재는 예산안 등만 제 외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국정감ㆍ조 사라든지 인사청문회, 의원징계안 등을 이 안건 조정위원회의 안건조정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기한이 정해져 있 기 때문에, 활동기한이 90일로 되어 있는데 이 기간이 지나면 사실상 심사 실익이 없는 그런 안 건들을 제외하자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사실상 안건조정위원회가 잘되고 있 지 않은데, 안건조정위 위원을 요구는 들어왔는 데 선임하지 않고 이렇게 흘러가서 사실상 안건 조정위원 제도가 잘 운영되지 않고 있는데 선임 요구 후 5일 이내에 반드시 선임하도록 하는 그 런 기한 신설에 대한 개정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안건신속처리 제도인데요. 이것은 선진화법이 되면서 법안들이 신속하게 잘 처리되지 못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신속처리안 건으로 지정이 되면 최소한 총 330일을 거치면 본회의에서 의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 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 기간이 너무 길다는, 신속처리가 못 된다는 그런 문제 제기에서 이 기간을 줄이자는 그런 안들이 들어 와 있습니다.

현재는 안건신속처리 의안이 되면 위원회에서

180일이 지나면 법사위로 가고, 법사위에서 30일이 지나면 본회의로 가고, 본회의에서 60일이내에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개정안대로위원회에서 180일을 90일, 석 달로 바꾸고 90일 또는 60일, 두 달 이렇게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법사위에서는 40일 또는 15일로, 그다음에 본회의는 60일까지 끌지 않고 처음 개의되는 본회의에 반드시 자동 상정되도록 하는 그런 식으로심사기간을 단축하는 법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신속안건으로 지정이 되려면 5분의 3 가중다수결이 적용되고 있는데 이를 재적과반수 로 완화하는, 그래서 안건신속처리 제도가 좀 더 신속하게 안건을 처리할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개정안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는 전 번에 심사하신, 좀 전에 심사하신 그 제도가 되 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생략을 시켰고요.

다음으로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는 예산안 등이 반드시 12월 1일에 본회의에 자동부의되도록 하 는 그런 제도가 되겠는데 여기에는 세입예산안도 같이 자동부의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예 산안 부수법률안의 범위가 지금은 제한이 되어 있지 않은데 이때까지 운영상 다수의 부작용을 감안해서 세입예산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안으로 한정하도록 하고 또 특정 행정목적 실 현을 위해서 이러한 세입예산 부수법안을 좀 편 법으로 활용하는 그런 것을 제약하자는 법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본회의 무제한토론 제도가 선진화법에 일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개정안 이 들어온 바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소위원장 서영교**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의견 주십시오.

그러면 수석님,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면 국회 의장의 안건심사기간 지정요건 이것은 개정안이 없다는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예, 개정안은 들어온 게 없습니다.

○소위원장 서영교 그러면 이것은 그대로 두고 넘어가면 되겠네요?

####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예.

○소위원장 서영교 그러면 여기서 있는 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4개네요. 4개 부분만, 우선 올라온 법안을 중심으로 가는 게 좋으니 4개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좀 나눠서 위원회 안건조정제도이 부분 관련해서 먼저 이야기를 좀 해 볼까요? 이것은 보니까 안건조정 제외대상 범위를 추가한 다라고 해서 국정감사·조사, 인사청문회, 의원징계안 등의 관련 안건을 조정할 수 있고 안건조정위원회 위원 선임기한을 신설하는데 선임요구 5일 이내에 선임하자 이런 내용이네요?

###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서영교 그런데 그동안 각 상임위나이런 데서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을 좀 선임해서하는 경우가 있나요?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요구는 들어왔는데 선임 되는 경우가 별로 없었습니다. 8페이지에 보시면 자료가 있습니다. 현황 자료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에 여러 가지 건들이 들어왔는데요, 주로 조정위원을 미선임해 가지고 그냥 이렇게 흘러간 경우가 많고, 된 것은 두 번입니다. 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안하고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추진중단 및 페기촉구 결의안, 두 가지가 안건조정위원이 선임되고 해서 본회의 의결까지 갔습니다.

○소위원장 서영교 그러면 이런 예로 서로 안건 조정이 잘 안 되고 머뭇거리고 있을 때 안건조정 위원회가 구성돼서 이렇게 받아들여진 예도 있고 안 받아들여진 예도 있는데 지금은 그것을 선임 요구가 있으면 5일 이내에 선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예, 그런 개정안이 들어 와 있습니다.

○소위원장 서영교 이와 관련해서…… 예, 신동근 위원님.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4페이지에 보시면 안건 조정제도 제외 안건에 대해서 개정안들을 쭉 나 열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안건조정제도에서 제 외를 어떤 것들을 할 것인지 한번 논의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동근 위원 저도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 그동 안에 법안은 사실은 좀 더 숙의 과정이 필요해서 시간이 더, 그것도 물론 불필요하게 낭비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좀 있을 수 있는데 국정감사 나 인사청문회는, 특히 국정감사 같은 경우에는 이미 90일 지나면 지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결국 그것은 증인을 신청 못 하게 하는 수단으로 악용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감사・ 조사, 인사청문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현실적으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이고 요.

또 어쨌든 간에 안건조정 대상으로 이렇게 선 정해 놓고 그것을 가지고 조정위원들이 조정했다 고 하는 경우를 저는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그래 서 조정위원 선임도 강제적 규정을 두는 게 실효 성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서영교 예, 그런 의견이 있으셨습니 다.

특별히 여야가 다른 의견이거나 이런 것 같지 는 않고 좀 더 해야 될 일이 많아지면서 안건조 정 대상범위를 조금 더 하자라고 하는 의견인 것 같은데……

'국정감·조사, 인사청문회, 의원징계안 등'이라 고 했는데, 수석님 여기 '등'에 여러 가지가 있나 요. 아니면 여기까지만이라고 볼 수 있나요? 등 도 너무 여러 가지가 있으면 또……

**○유의동 위원** 어디, 몇 페이지 '등'을 말씀하시 는 건가요?

○소위원장 서영교 1페이지에 개정안 첫 번째 것에 안건조정 제외대상 범위를 추가하자.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그 부분이 4페이지에 있 습니다.

4페이지에 표로서 현재에는 예산안, 기금, 임대 형 민자사업 한도액 그리고 체계 · 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사위에 회부된 법률안까지만 제외하고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국정감·조사, 인사청문 회 관련 안건 이런 것도 안건조정 대상에서 제외 하자고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소위원장 서영교 그러니까 안건조정 대상에서 빼자 이런 얘기인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서영교 그러면 이걸 안건을 조정하 느라고 복잡해진다 이런 얘기인가요?

아니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동근 위원 국정감사 시작하는데 증인을 요청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증인을 거부하고 싶은 측에서 이걸 안건 조정으로 신청을 해 버리면 90일까지는 못 하니 까 그러면 국정감사는 다 끝난 거지요. 그렇게 못 하게 블로킹하는 것으로 악용되고 있어서, 법 안은 시간이 좀 지나도 다시 심의할 수가 있지만 그런 요소가 있는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심사기한이 있는 것은 제외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국정조사 · 감사 이런 게 다 기한이 있기 때문 에 이걸로 해서 90일까지, 만약에 위원회를 한다 고 하더라도 90일까지는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 동안 사실상 국정감사도 못 하고 조사도 못 해야 되는 것이니까 이런 것들을 제외하는 것도 한 방 법입니다.

○소위원장 서영교 안건 조정을 하는데 90일 정 도까지 조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예, 지금 법에서는 90일 까지를 활동기한으로, 그러니까 90일 이내로 정 하기 나름입니다.

**○소위원장 서영교** 그러니까 국정감사 끝나는 거네요.

의견을 주십시오.

○신동근 위원 야당이 요구했는데……

○정유섭 위원 별 이의 제기 없습니다. 별로 의 견이 없어요.

신동근 의원안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서영교 그러면 우선 의견을 주시는 데, 신동근 의원님 의견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안건신속처리제도 330일 걸리던 것을 좀 줄여 나가자. 그래서 위원회에 90일 또는 60일, 그다음에 법사위 40일 또는 15일, 처음 개의 본 회의에 바로 상정할 수 있다라고 하면 최장 130 일 정도 되네요. 그리고 최단 75일 정도 지나면 심사되지 못하고 있는 법안들을 처리할 수 있게 하자, 기간을 단축하는 안입니다.

선진화법을 하고 나니까 좋기는 한 것 같습니 다. 그래서 다 단축시켜 버리는 것은 어떤지 의 견을 제기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이 부분도 구체적인 것 은 20페이지에 심사기간 단축 관련해서 개정안들 을 요약 정리했습니다.

○정유섭 위원 여기에서 의견은 신속처리 대상 안건인데 기간이 위원회 180일, 법사위 90일, 본 회의 60일 하면 장기간인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소위원장 서영교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정유섭 위원** 이 기간을 단축하는 데는 동의를 하는데요.

이게 가중다수결로 해서 5분의 3을 절대 다수 인 과반수로 하자는 건데, 그러면 신속처리 안건 이 남용돼요. 과반이면 이게 뭐 조금만 수틀리면 안건신속처리제도로 가자 이렇게 넘길 수가 있기 때문에 5분의 3 규정을 완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서영교 5분의 3을 완화하는 것은 반대이나 신속처리 기일을 줄이는 것은 찬성이다이 말씀이시고요?

○김종민 위원 저는 기일도 기일이지만 가중다수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볼 거냐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선진화법 핵심 쟁점은 그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가중다수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헌법적으로 의결권을 제한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과반수를 다수결로 정해 놓은 이유는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사람들의 주권을 존중하는 방식이거든요. 찬성을 51%라도 하면 이 주권이 소중하기 때문에 이것을 결정으로 보자라고 하는 게 과반수 의결의 헌법정신인데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나귀중해서 예외적으로 하는 게 대통령 탄핵이라든가 헌법 개정이라든가 이런 몇 가지 안건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5분의 3 가중다수결의 문제는 뭐냐면 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수의 주권을 봉쇄하거나 침해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정말로 제한적으로 해야지 이렇게 우리 국회 일반의결에 이런 봉쇄조항 비슷하게 넣으면 이것은 결과적으로 5분의 3에 이르는, 5분의 3의 직전까지의 그 숫자, 그 민의 혹은 그 주권이 일상적으로 침해되는 되게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국회가갖고 있는 불신의 뿌리가 되기도 하고요.

나는 이 문제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번에 한 번 고민을 해 보고, 여야 간의 유불리 문제를 떠 나서 한번 그런 원칙을 하고 실시 시기를 다음 국회 이후로 가자.

## **○소위원장 서영교** 끝나셨습니까?

이철희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이철희 위원 저도 이게 실시 시기를 21대 국회부터 적용하는 걸로 해 놔야 그나마 논의가 가능해질 것 같아요. 시기를 그때로 정해 놓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선진화법 조항은 다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 없애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19대, 20대 써 봤는데 별 실효성이 없는, 국회가 공전되는…… 저는 잘못된 결정보다더 나쁜 게 무결정이라고 보는 사람이라 아무 결정도 못 내리고 가는 이런 국회를 계속 방치하는 것은 온당치 않고요.

그래서 21대 국회는 어느 당이 다수당이 될지 모르니까 그걸 전제로 하면 의사결정은 이루어지 게끔 하는 게 원활한 국회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거고 다만 과거처럼 흔히 동물 국회로 돌아가는 것을 막는 장치들은 또 다르게 할 수 있다고 저 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의사결정 숫자 가지고, 의 결정족수 가지고 제한하는 것보다는 다른 방법으 로도 제한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 게 정상화시키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우리가 타협을 제도화하자는 좋은 문제의식으로 출발하기는 했습니다만, 타협이 제도화되는 측면도 없지는 않을 겁니다. 일부 있기는 합니다만 중요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해서국가적으로 지체되는 현상들, 손실이 상당하기때문에 저는 폐지가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현실적으로 그나마 이게 취지를 살리면서도 국회가 작동가능하게 실제로 뭔가 결정을 내리는 국회가 되도록 만드는 게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러려면 여기 안건신속처리제도 같은 것도 가중다수결을 제한하는 게 맞고요. 180일, 90일, 60일 이렇게 하는 것을 대상을 아주 엄격하게 제한해 놓든지 이러이러한 것에 관련된 것들은 이렇게 이 트랙으로 가고 나머지는 단축해서 가는 트랙으로 간다든지 아예 없애든지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회 안건조정제도라는 게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묶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소수파를 보호하는 조항이고, 신속처리제도는 장기 무결정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 5분의 3이 동의하면 그래도 330일을 거쳐서 결정해 주자는 건데 앞의 안건조정제도에서 소수파를보호하는 것에 비하면 안건신속처리제도에서 다수파를 존중하는 정도는 훨씬 약한 것 같아요,제가 볼 때는. 이게 2개가 균형을 맞추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는 기간도 줄이고 정족수 조항도 바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소위원장 서영교 그러면 이철희 위원님은 우선 기간을 줄이고 정족수도 과반 정도로 하고…… ○이철희 위원 예.

**○소위원장 서영교** 알겠습니다.

신동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동근 위원 물론 과거처럼 의원들끼리 치고 받고 이렇게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마는 그것보다 더…… 식물국회 자체가 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 해서는 서로 의견들을, 동의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기존에 법이 들어와 있어서 그 법을 중

심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오늘 심의를 하는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저는 여야 간에 협의를 하든 지 이것과 관련된 개선소위원회를 구성하든지 해 서 서로 협의해서 법 전체를 손을 어떻게 볼 건 지를 같이 논의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 렇게 생각하는데요.

○소위원장 서영교 또 의견 주십시오.

그러면 우선 의견을 약간 좁혀 보면, 안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은 정유섭 위 원님이나 이철희 위원님이나 같은 의견이시고 그 러나 가중다수결 부분에서 정유섭 위원님은 5분 의 3으로 가자 그리고 이철희 위원님 같은 경우 에 과반 정도로 하자라는 의견이시고. 그리고 또 신동근 위원님께서는……

- ○신동근 위원 그러면 좀 더 보충……
- ○소위원장 서영교 예.
- ○**신동근 위원** 하여튼 저는 그렇게 선진화법의 전면 폐지까지 포함해서 서로 논의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인데 기왕 이 법을 가지고 오늘 심의를 할 것 같으면 저는 심사기간 도 좀 단축하고 아무래도 ..... 물론 소수를 보호 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민주주의 다수결 의 원칙에 의해서 2분의 1, 과반수 이상으로 하 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소위원장 서영교 그러면 의견이 김종민 위원 님, 신동근 위원님, 이철희 위원님 이렇게 비슷한 의견이신데…… 그렇다고 정유섭 위원님도 극구 안 된다 이것보다는 우선 안전장치를 그렇게 좀 갖자고 하시는 말씀이라서……
- **○정유섭 위원** 남용의 우려가 있다는 거지요. 안건신속처리……
- ○소위원장 서영교 예, 그래서 조금 더 논의해 보자라고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 그러면 이렇게 의견이 좀 모아진다고 놓고. 그다음 법사위 체계……
-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그 부분은 아까 심사하 신 부분입니다.
- ○소위원장 서영교 체계·체구입니까, 체계·자 구입니까? '체계·체구'라는 말이 있는 겁니까?
-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그것은 오자가 되겠습니 다.
- **○소위원장 서영교**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런 것을 법사위에서 보는 건가요? (웃음소리)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제도 개편 관련해서 앞

에 나왔던 의견들이 여기에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이 체계·자구 심사기간 지정 규정 을 삭제하자 이런 건데……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것은 국회의장님의 체계·자구 심사기간 지정 규 정 삭제입니까?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예, 이 부분은 아까 법 사위 제도개선할 때 논의하셨던 그 부분이기 때 문에 참고로 이것도 선진화법의 일부라는 것만 제가 알려드리는 것이고요.

○소위원장 서영교 그런 건데 여기 나와 있는 '국회의장 체계·자구 심사기간 지정 규정 삭제 등'이 뭡니까?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이것은 본래 황주홍 의 원님 안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은 국회의 장님이 원내대표들과 같이 합의하면 직권상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법사위에 120일 이상 계류…… 합의만 하면 120일이 안 되더라도 바로 직권상정 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없애고 법사위에서 만 약에 일정 기간 동안, 지금부터 120일 지나면 본 회의로 바로 오도록 하는 그런 개정안이 되겠습 니다.

**○소위원장 서영교** 그래요?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그러니까 이게 다른 것 하고 결부해서 낸 것인데 이 부분만 따로 써서 좀 오해의 소지가 있겠습니다.

- ○소위원장 서영교 우리가 아까 국회의장님께서 안건이 다 통과되고 난 이후에 어떻든 공포하기 전에, 다른 데 보내기 전에……
-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그 부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 ○소위원장 서영교 그 내용이 아닌 거라는 것이 지요?
-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예, 그거하고는 다른 것 입니다.
- ○소위원장 서영교 그러면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기간 단축의 건이 또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에서는 이 내용 관련해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안으로 한정하고 특정 행정목적 실현을 위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안의 경우는 세입예산안 부 수법으로 지정하지 못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내용 입니다.

그러니까 세입예산안에 직접적 영향이 있는 부 분만 세입 부수법안으로 하자 이런 말씀이신 것 이지요?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예, 31페이지를 보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서 이해하시기 쉬운 데요.

지금은 예산안과 더불어서 세입예산안에 부수하는 법률들, 특히 세법들이 되겠습니다. 세법하고 간혹 가다가 국민연금법이라든지 국민건강보험법 이런 것도 해당이 되는데요. 그런 부분이바로 세입예산안하고 관계가 되니까 부수법안으로 되어서 바로 본회의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악용하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에서 이 법안을 내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세입예산안에 간접적인 게 아니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률안만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으로 하고 또 세입예산안하고 관련 없는 그런 특정한 행정 목적을 가진 그런 부분이 있는법안은 아예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으로 하지 말도록 하자는 그런 법안입니다.

그런데 그 취지는 이해가 됩니다마는 다음 32 페이지에 보시면, 세입예산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간접적인 영향이지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세입예산안 부수법률들과 반드시 같이 가야 되는 그런 사례가 상당수 있습니다.

사례도 있는데요, 2014년에 국민건강증진법 등과 함께 부수법률안으로 지정된 지방세법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정책적으로 연계된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처리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개정안대로 하면 이런 게 처리가 좀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세입예산안과 좀 무관한 조항이라 하더라도 세법 같은 데 징수 절차라든지 이런 것이 같이 묶여서 처리되어야만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현행대로 국회의장님의 재량이었더라도 용인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 ○소위원장 서영교 라고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스서저무의의 기스기 세
-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예. ○ ▲ 의의자 및 보였고 . 스크리의 의국의
- ○소위원장 서영교 수석님의 의견이시고, 수석 전문위원실의 의견이십니다.

○유의동 위원 아무래도 수석 입장에서는 의장의 권한을 열어 놓는 것에 찬성할 수밖에 없는데지금 이게 여야를 불문하고 어떤 당이 의장을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매해 겪는 논란의 일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엄격하게 명문화를 시키는 것이 차후에…… 이게 어떻게 보면 일종의게임의 룰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인데요. 이 부

분은 명확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것이 부담 스럽다면 이철희 위원님이 주장하시는 것처럼 룰 과 관련된 문제는 21대 국회에서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매듭을 짓고 가는 게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소위원장 서영교 예, 유의동 위원님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 ○정유섭 위원 저는 권은희 의원안, 세입예산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률안만 하는 것은 사실 너무 경직적인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사안이 발생할지 모르는데…… 부수법안이라는 게 절차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 여러 내용들이 있을수 있는데 직접적인 영향이라는 것보다는 지금처럼 의장이 어느 정도 판단할수 있는 재량은 줘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전에 유의동 위원님 말씀마따나 21대부터 하자 그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반대하지 않고. 그런데 너무 경직적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 ○소위원장 서영교 두 분의 의견이 같은 듯 다른 듯 그래서 21대로 가는 것은 다 동의를 하시는데 21대부터 적용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 ○정유섭 위원 없습니까?
- ○소위원장 서영교 아니, 할 수 있는데……
- ○유의동 위원 아니, 이 법의 공포일이나 이런 것을 따져서 부칙에 달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 는 이것은 입법정책적 판단에 따른 거라고 생각 을 하고요. 특히 우리 운영위에서 하는 국회법이 라는 것이 국회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의 룰에 관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객관적일 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웬만한 룰은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철희 위원님?

○이철희 위원 예.

마이크 켜고 할까요?

- ○소위원장 서영교 그러면 이철희 위원께서도 짧게 말씀 주시고, 또 그다음 것도 말씀하셔야 될 게 있으니까.
- ○이철희 위원 이 말씀을 너무 거창하게 드리면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는데, 룰과 관련된 것은 현재 질서가 있잖아요. 이 질서가 잡혀 있는 데서 룰을 바꾸면 손해 보는 쪽이 동의를 안 할 거

기 때문에 그러면 못 바꾼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래의 영역, 뭔가 질서가 정해지지 않은 영역의 시점에 시행을 목표로 해 놓고 이것을 개 정해야 서로 열린 자세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당장 뭘 바꾸자고 그러면 손해 보는 쪽에서 하겠 습니까? 21대는 다 다수당을 목표로 하는 거니까 그것을 부정할 정당은 없잖아요. 그것을 전제로 해서 국회법을 바꾸는 게 저는 합리적인 대응이 라고 봅니다.

○소위원장 서영교 그러면 의견을 조금 좁히겠 습니다.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이야기를 하다가 이 의견으로 갔는데 우리 정유섭 위원님께서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안으로 한정하자라고 하는 게 사실은 보기에 따라 많이 다를 수가 있 습니다. 이것을 악용하는 것을 막자고 하는 거지 사실 이것 가지고 또 논란이 될 수도 있어서 정 유섭 위원님도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 가라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것에 대한 내용은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서 하면 될까요? 그러니 까 지금 말씀처럼 세입예산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안으로 한정하고, 특정한 행정목적 실 현을 위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 과하는 법률안의 경우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하지 않게 한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이 내용 정도로 하면, 대신 21대로 하고 통과를 할 수 있 겠다고 보시겠습니까?

정유섭 위원님, 아닙니까?

- ○정유섭 위원 아닙니다, 현행대로 하자는 거지
- ○이철희 위원 이 법이 필요 없다는 거지요. 현 행대로 가자는 거지요.
- ○소위원장 서영교 현행대로 가자는 거니까, 그 러면 21대 얘기는 지금 이철희 위원님은……
- ○정유섭 위원 그러니까 선진화법 전체를 봤을 때 각 조항에서 이익・불이익을 따질 수가 있기 때문에, 유불리를 따질 수가 있기 때문에……
- ○소위원장 서영교 있으니 이것은 현행대로 가 고.....
- ○정유섭 위원 선진화법을 21대부터 적용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이 조항은 저의 의견 은 가는 게 맞다.
- ○소위원장 서영교 그 조항은 반대시고요 현행 대로 가는 게 맞다.

그러면 두 번째……

- ○**정유섭 위원** 현행대로 가는 것을 지지한다 이 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소위원장 서영교 현행 안에 약간의 공간이 있 어야 한다,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 ○정유섭 위원 예.
- ○소위원장 서영교 그러면 맨 위로 가겠습니다. 안건조정 제외 대상 여기는 좀 합의를 볼 수 있는 게 있으면 합의를 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조정 제외 대상 범위를 추가하자라 고 했는데 국정감사·조사, 인사청문회, 의원징계 안 등 관련에 대해서는 제외하자라고 하는 것 을.....

- ○신동근 위원 시기가 특정되어 있는 사안들……
- **○이철희 위원** 누구 안이에요?
- ○신동근 위원 의원들 안이 있잖아. 어느 안으 로.....
- ○정유섭 위원 다 해당되는 것 같은데.
- **○이철희 위원** 4페이지.
- ○신동근 위원 4페이지 것을 다 하면 되지.
- ○**이철희 위원** 이것을 다? 가장 포괄적인 것으 로?
- ○신동근 위원 추가잖아.
- ○**이철희 위원** 그러니까 더 늘리는데 이것을 다 추가하자는 거예요?
- ○정유섭 위원 김관영·권은희 의원안, 강병원 의원안, 김민기·노회찬 의원안, 김철민 의원안 이게 다 시한이 정해진 것을 안건조정제로 가면 시한이 너무 벌어지니까……
- ○이철희 위원 그렇지요.
- ○정유섭 위원 이것은 이게 다 해당이 된다 이 렇게……
- ○**이철희 위원** 노회찬 의원안이 좋네요.
-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김철민 의원안 같은 경 우에는 의원의 자격심사 등이 윤리특위에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도록 하는 개정 을 전제로 해 가지고 이것을 제외하자는 그런 것 입니다. 심사기한이 있으면…… 심사기한 없는 경우에는 아마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 ○**이철희 위원** 보니까 김철민 의원안 빼놓고는 거의 유사해요.
-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예, 보다 포괄적이냐 아 니냐 그 차이입니다.
- ○**이철희 위원** 국정 감·조사와 청문회가 관련 되거든요.

김민기 · 노회찬 의원안으로 가면 될 것 같은데

아니면 김관영 의원안으로 가도 되고…… 여기는 좀 더 포괄적이고 여기는 좀 더……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가장 포괄적인 것은 김 관영·권은희 의원안입니다.

○**이철희 위원** 그렇지요, 이것도 좋고.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다른 안으로 가면 국정 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이런 것도 바로 그것은 안 건조정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철희 위원** 그렇지, 이것으로 합시다.

그러면 김관영·권은희 의원안으로 하면 되겠네.

○소위원장 서영교 잠깐만, 죄송합니다. 제안이 와서……

○이철희 위원 정회해요.

○소위원장 서영교 위원님 죄송합니다, 간단히…… 제안이 와서요.

저희가 오늘 많은 안건을 논의하고 죽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하나가 청원제도 관련한 것인데요. 이것을 보면서 의견이 맞당는 듯하면서도 약간 또 이게 국회 운영에 관련한 것이다 보니까 당의 입장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한 10분 정도 정회하고 그러고 나서 의견을 좀 더 좁혀보는 건 어떨까 싶은데요.

그러면 잠시 정회했다가 5시에 회의를 계속하 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회의중지)(17시02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서영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 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운영위를 열어서 지금 청원 관련한 개정안만 같이 논의하지 못하고 모든 안건에 대해서 다 논의를 했습니다. 논의를 했고 또한서로의 의견들을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도 서로 공유했습니다. 이제 의견을 접근하고 또한 법안을, 개정안들을 만들어 나가야 할 시점입니다.

이 시점에 두 당 간사들에게 제안해 오시기를 의견이 같은 듯하면서도 차이가 있고 그래서 이 의견을 좁혀 나가기 위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모 임을 통해서, 소소위를 통해서 의견을 모으자고 하는 의견을 두 당 간사님들께서 제안을 하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조금 양해해 주 신다면 그런 형태로 들어가서 논의를 좁혀 볼까 합니다.

○김종민 위원 소소위?

○소위원장 서영교 예.

그러면 그렇게 하되 국회 상임위 소위의 상설화 그리고 또 정례화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일하는 국회의 모습 그리고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모습을 위해서 그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합의 안을 도출해 내자고 하는 데 의견을 같이 모아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또한 당대표의 지난 합의를 통해서 각 상임위에서 논의된 부분들이 법사위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너무 길거나 아니면 각 상임위에서 의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사위를 통과돼 오지 못해서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는 사례가 수십 건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법사위가 원래 국회법에 되어 있는체계·자구 심사에만 집중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견은 실제로 다 통일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계·자구 심사에 집중하고 또한 그게 법률적으로 상충되거나 위헌의 소지가 있는지 정 도를 보는 것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 고 하는 의견이, 3당 원내대표 간의 합의로 그 심사를 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었고 많은 법안 들이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 합의 정신에 맞춰서 합의를 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개선하고 바꿔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심도 깊게 논의해야 한 다, 그리고 전향적으로 이 부분에 합의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나머지 안건들은 다시 우리 소소위에서 집중 논의하고.

그래도 지금 그 사이에 수석전문위원과 입법차장께서 이런 정도로 상설위원회를 합의해 주시면 어떻겠는가라고 하는 의견을 모으신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잠시 말씀해 주시면 그걸 듣고 저희가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십시오.

○윤재옥 위원 그 전에 제가…… 지난번에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와 관련돼서 개선을 해야 된다는 이 문제를 가지고 여야 간에 협상을 할 때, 참고하십시오. 또 이 문제를 가지고 심사를 하실 텐데 지금 운영상에 민주당의 원내대표께서 문제 제기를 하신 부분이 법사위에 장관들 출석 문제……

위원장님!

○소위원장 서영교 예.

○**윤재옥 위원** 그러니까 장관들 출석 문제 이런 문제점은 개선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 하 셨어요. 그래서 실제 체계·자구 심사 이 자체를 가지고 논의하면 한 발짝도 합의를 이루기 어렵 기 때문에 운영 과정에서 장관들이 꼭 출석해야 되는지 여부하고 또 아까 120일 기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여야 간에 논의를 하면 조 금이라도 개선할 그런 합의를 찾을 수 있지 않겠 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이건 지금 소위 운영제도 개선 보고에 앞서 제 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김종민 위원 장관 출석은 법 규정은 아니지 요?

○**윤재옥 위원** 예, 그러니까 운영상 그런 문제 들만이라도 고치는 게 좋지 않느냐……

○김종민 위원 운영의 묘를 좀 개선하자 이런 취지지요?

○윤재옥 위원 예.

애초에 이 합의를 할 때 그런 말씀이 있었어 요. 왜냐하면 이 체계·자구 심사권을 당장 없애 거나 이것 법 내용을 고치는 게 어렵다는 그런 입장에 여야 간에 약간의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으니까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그런 문제라도 개선하는 방법을 찾으면 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립니 다.

○소위원장 서영교 또 혹시 이와 관련해서 더 말씀해 주실 내용 없으십니까?

○정유섭 위원 제가 자료 확인할게요.

○소위원장 서영교 법사위의 권한 부분 관련해 서 그 부분이 권한을 넘어서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은 각 상임위에서 그동안 많이 제기돼 왔던 부분 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지금 조건 에서도 각 상임위가 의결된 부분대로, 또한 체 계 · 자구 심사에 한해서만 봐야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체계·자구 심사권까지 폐지해야 된다라 고 하는 강력한 요구와 의견들이 있고 또한 법안 들도 많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들이 오늘 의견 속 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견을 또 한 번 더 기록하고, 각 당 간사들 간에 모여서 의견을 접근해 나가도록 하는 부분을 하고 다시 한번 저희가 운영개선소 위를 열어서 그 접근을, 다시 법안 통과를 위해 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설소위원회 관련해서 말씀 주실 내용 있으면 간단히 하시고.

○국회사무처입법차장 한공식 지금 위원님들 논 의했던 부분들 포함해서 안을 만들었는데요 이것 은 수석전문위원이 설명을 하고 필요하면 제가 보충설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소위원장 서영교 예.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보고드리겠습니다.

방금 나누어 드린 자료를 가지고 조문별로 설 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본래 의장님이 제시하신 안에서 '상임위원회는 법률안, 청원과 현안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사하고 국정조사 · 청문회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이렇게 해서 좀 오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국정 조사도 상설소위원회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그 런 건 아니고 현행 국회법에 따라서 할 수 있다 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수정의견 을 냈습니다.

1항에 보시면 '의안, 청원, 행정입법과 현안사 항과 관련된 안건을 전문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부처별 또는 분야별로 나누어 둘 이상의 상설소 위원회를 둔다. 다만 겸임위원회는 하나의 상설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그래서 하나만 둘 수 있 도록 이렇게 예외규정을 두었습니다.

2항에서 '상설소위원회는 국회법이나 국감조법 에 따라서 청문회 및 국정조사·감사 등을 실시 할 수 있다.' 해서 현행 규정에 따라서 할 수 있 는 걸로 명확하게 했습니다.

3항은 상설소위원회 명칭을 정할 때 외부에서 보더라도 이 위원회가 뭘 하는 건지, 제1상설소 위원회, 제2상설소위원회 이런 식이 아니고 그 명칭에서 하는 일을 분명히 나타낼 수 있도록 하 는 그런 사항입니다. 의장님 안과 똑같은 거고요.

4항에서 '상설소위원회는 매주 1회 이상의 개 회를 원칙으로 한다.' 해서 일단 매주 1회 이상, 이것은 그 횟수에 대해서는 한번 논의하셔 가지 고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5항은 현행과 같고, 제6항에서 상설소위원회 외에 예산 · 결산 등을 위한 별도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필요한 것으로 보아서 다소의 조문 정리만 해서 그대로 살렸습니다.

그리고 또 8항이 중요한데요, 8항에서 현재는 증인을 부르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때 소위원회

의결로 할 수 있는데, 다만 그 주체를 위원장 명의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명의를 소위원장 명의로 하되, 다만 위원장과의어떤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 없이 하기 위해서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서 하도록 이렇게 하는 안을제시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그 밖에 상설소위에 필요한 예산 지원이라든지 인원 그리고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서 운영상 협상의, 자세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2페이지, 부칙입니다.

제1조(시행일)에서 2020년 5월 30일부터, 전면실시는 21대 국회부터 하되, '다만, 국회규칙으로정하는 상임위원회는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회규칙이 정하는 날부터시행한다'로 해서 국회규칙으로 정할 때, 그러니까 일종의 시범적으로 하고자 하는 위원회 이런것을 대표님들 협의나 이걸 통해 가지고 몇 개를먼저 20대 국회부터 할 수 있고 또 그 시행시기도 국회규칙으로 공포 후 6개월이 되지 않는 범위부터는 하도록 여유를 두었습니다.

제2조(소위원회 운영에 관한 특례)는 만약에 20대 국회에서 상설소위원회 제도를 국회규칙에 의해서 도입하지 않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현재 있는 법안심사소위를 매주 1회 이상 개회하는 것으로,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개회 빈도에 따라서 만약에 월 2회로 하시면 이 부분도 월 2회로 해서 할 수 있는 걸로, 자주 하는 걸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제3조는 그냥 조문 정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서영교 위원님들 이 부분 들으셨는데 저희가 좀 더 간사들 간에 합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고, 저희가 사실은 청원 제도 개선 관련한 안건이 하나가 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논의를 하더라도 간단히 짚고 넘어가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야지 저희 운영위가 할 내용을 우선은 한 번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을 잠깐 내서 이 부분 마저 듣고 정리하고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하기 어려우시겠지만 그렇게 하시지요.

- ○윤재옥 위원 빨리 좀 합시다.
- ○소위원장 서영교 예.
-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그러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원제도 개선 관련 심사 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관표로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청원은 의원 소개가 필요한데 이를 개정안에서는 의원 소개를 폐지하는 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폐지하거나 또는 임의절차화하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청원이 들어와 있고, 그와 더불어서 전자청원시스템을 도입하는 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전자청원시스템은 의원소개를 폐지하면서 시스템을 도입하든지 아니면의원 소개를 유지하면서 시스템을 도입하든지 이런 안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은 청원시스템 도입 자체는 긍정적으로 보고, 폐지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심사기구로서 현재는 소관 위원회에 청원을 회부하게 되어 있고 청원소위가 다 구성되어 있는데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는 개정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민원고충사항, 즉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는 그런 민원고충사항에 준하는 것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청원심사특위에서 하고 기타사항, 즉 제도개선 등 입법 관련 사항 이런 것은소관 위원회로 회부하자는 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 심사절차에 있어서는 현재 청원이 회부된 후 90일 이내에 위원회가 처리하도록 하고 있고, 다만 60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1차 연장을 할 수 있고 또 위원회 의결을 한다면 추가 연장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니까 계속 연장을 해서 청원이 잘 처리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그런 문제의식에서 1차 연장할 때는 청원심사소위의 의결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안이 있고 또 매회기 1회 이상 청원소위를 개회하도록 하는 안이 있습니다. 청원소위를 보다 활성화하자는 그런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이송 및 처리에서는 지금 국회가 채택을 해서 정부로 이송하면 정부가 청원 처리를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그런 데 대해서 규정이 없습니다. 그 래서 늦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90일 이내라고 이 를 기한을 정하는 그런 개정안이 들어와 있고, 또 청원 지지 서명으로서 6주간 10만 명 이상을 받 은 청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는 그런 개정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 모든 의안은 의원 임기만료가 되면 폐기 되는데 청원에 대해서는 임기만료 되더라도 폐기 하지 말고 그다음 대로 가도록 하자는 그런 안이 있고, 실무부서 국회민원지원센터가 있는데 보다 좀 더 청원에 집중하는 청원실을 설치하자는 개 정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서영교** 청원제도 관련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지금 이 부분도 윤재옥 수석께서는 따로 논의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윤재옥 위원** 아닙니다. 이것은 쟁점이 없어요. 이것은 심사를 하면서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 보 면 거의 정리가 돼요. 제가 전반기에도 법안심사 소위원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청원 관련해서는 특 별한 쟁점이 없어요. 위원님들끼리 의견이 모아지 면 바로 여기서 가결해도 됩니다.

○소위원장 서영교 그러면 한번 살펴보도록 하 겠습니다.

청원이 항상 의원 소개가 필요했고 서면 제 출.....

저희가 지금 의결정족수가 되나요?

-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됩니다.
- ○소위원장 서영교 그러면 이것만 한번 살펴보 겠습니다.

의원 소개 폐지 또는 임의절차화, 서면 또는 전 자문서 제출. 그러니까 '또는 전자문서 제출'로 하 는 청원에 대해서 여러분의 의견이 어떠십니까?

○이철희 위원 그냥 다 통으로 의결해요.

○소위원장 서영교 그러면 특별히 이견이 없으 시면 이것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은 바뀌었기 때문에……

○정유섭 위원 아니, 의원 소개를 폐지한다고 요?

- ○**소위원장 서영교** 의원 소개는……
- **○정유섭 위원** 의원 소개를 유지해야지.
-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이게 두 가지 안이 있습 니다. 전자청원 제도를 도입하면서 의원 소개를 유지하고 하자는 안도 있고 의원 소개를 폐지하 고 하자는 안도 있습니다.
- ○소위원장 서영교 그러면 의원 소개를 놓고 서

면과 전자문서 제출, 두 가지를 같이 가능할 수 있게 이렇게 하시는 것으로 하시면……

- ○이철희 위원 그럼 의원 소개를 안 하지.
- ○김종민 위원 의원 소개 그냥 폐지하지요. 저 는 폐지해도 된다고 보는 게 ......
- ○정유섭 위원 의원 소개를?
- ○김종민 위원 예.
- ○**이철희 위원** 없어도 돼요.
- ○김종민 위원 우리가 의회의 권한을 침해할 소 지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난립 가능성 때문에 하는 건데, 지금 전자소통이 활발한 상태에서 난 립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는 전자적 방식이 되게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개인이 누가 오프 라인으로 들고 와서 많이 난립하지는 않을 거고 전자적으로 난립할 거거든요. 그러면 국회가 거 기에 대한 플랫폼 대책만 세우면 지금 청와대 청 원하듯이 그 청원에 대한 비중을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 위주로 해서 여기서 처리할 수 있는 건데…… 의원 소개가 그것 이외 의 다른 실익이 없잖아요.
- ○**윤재옥 위원** 국회사무처에서는 의원 소개 폐 지와 관련해서 참고로 해 줄 이야기가 없나요?
- ○**국회사무처입법차장 한공식** 이것과 관련해서 청와대 국민 민원 그게 어떻든 법적 근거라든지 그런 문제 제기가 있어서 의장님한테 보고를 해 서 혁신자문위원회에서 안을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든 전자시스템을 통해서 일정 수의 국민들이 이런 민원을 했을 경우에 기간을 정해 서 정식적으로 접수해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그 런 제도를 구축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소위원장 서영교 우선 그런 제도를 구축한다, 그런데 거기에 의원의 소개 부분에 대해서는 어 떠냐는 것을 질문하는 겁니다.
- ○**국회사무처입법차장 한공식** 의원 소개는 없습 니다.
- ○소위원장 서영교 의원 소개는 없이, 자문위원 회가 그런 의견을 냈다 이거지요?
- ○**이철희 위원** 없어야 청원이 활성화되지.
- ○김종민 위원 폐지에 대해서 폐지하면 안 된다 고 반론은 없었지요?
- ○소위원장 서영교 그 부분은 검토를 안 하신 것 같은데요.
- ○김종민 위원 없었지요?
- ○국회사무처입법차장 한공식 그런 것은 없었습 니다.

○김종민 위원 별문제가 없어요.

○윤재옥 위원 지금 영국에는 '서면청원은 의원 소개가 필요하고 전자청원은 의원 소개가 불필요 하다'이렇게 되어 있네요. 독일은 서면청원이든 전자청원이든 의원 소개가 필요 없고.

○소위원장 서영교 그러면 조금 절충을 해서 서면청원 할 때 의원의 소개가 필요하다로 우선 기존의 방식을 놔두고 여기다가 전자청원을 할 때는 의원 소개 없이 가능하다, 이렇게 가면 어떨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하나……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그러면 너무 많은 청원이 들어오면 그것을 모두 다 심사할 수가 없습니다. 현행 시스템 청원은 의원님들이 심사를 하게되어 있기 때문에, 전자청원은 굉장히 용이하게할 수 있는 겁니다.

○정유섭 위원 그러면 너무 많은 청원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냐고요? 너무 많은 청원은 감당할 수 없다?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그래서 전자청원 제도를 도입하면서 시스템상으로 일정 수 이상의 같은 청원이 들어온다면 의원을 소개시켜 주는 그런 시스템도 같이 넣어 가지고 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윤재옥 위원 현실적으로 국회가 청원 심사를 일정 기간 안에 해 줘야 되는데 의원 소개가 없 으면 도대체 이것 정리를 못 할 거예요.

○정유섭 위원 나는 여기 반대할 게 있기는 있 거든.

○이철희 위원 반대할 게 있대요, 토론하재요.

○김종민 위원 그러면 더 토론합시다.

○**이철희 위원** 소소위에서 해요, 소소위에서.

○김종민 위원 저는 이것의 요건을 좀 연구를 해 볼 수는 있어요. 의원 청원을 하든지 아니면 청원인 수가 몇 명 이상은 의무적으로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를 별도로 둬서 거기서 처리해서 갈음할 수 있게 하든지 이런 디테일한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자고요.

○소위원장 서영교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의원 소개로 청원을 할 경우에는 실제로 그 의원이 그 사람들 불편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의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책임지고 연결하고 해결하는 방안들이 좀 있지 않나, 사실 의원 소개라고

하는 것은 그런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의원 소개 필요라고 하는 현재 제도에다가 서면 제출 가능하고 그러면서 의원 소개를 통해서 전자문서 제출 가능하게하면 이게 원활하게 하는 형태로 가자라고 하고 또 더 필요할 때는 의원 소개 때문에 전자청원이어렵다고 할 때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제도를 개정하고 이 부분은 이렇게 의원 소개를 통해서 서면 제출과 전자청원시스템을 도입하는 이런 형태로 절충안으로 가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떠세요?

○**윤재옥 위원** 의원 소개를 통해서 서면 또는 전자청원할 수 있게, 그렇게 하지요.

지금은 전자청원이 안 되는 거지요?

- **○국회사무처입법차장 한공식** 예, 그렇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현재는 없습니다.

○김종민 위원 아니면 '의원 소개 혹은 몇 인 이상의 청원'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청원인 수를 좀 제한을 둔다든가?

○국회사무처입법차장 한공식 그것은 지금 법적 근거 없이 몇 인 이상의 청원은 저희들이 그런 유사한 제도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김종민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법적 근거를 놓고 하면……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의원들이 일도 안하고 이렇게 한다고 계속 욕하는데 '청원도 안받아 주고 자기들 안 통하면 못 하게 봉쇄해 놓았다'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러니까 일정 요건이 되는 것은 필요하지 않나, 그러면 청원인 수를 좀 규정해서 의원 소개가 없어도 할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어 주자, 그게 요건이 안되는 청원은 의원들 부탁을 좀 하고, 그러면 난립을 방지할 수 있잖아요.

○소위원장 서영교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만이 넘으면 답변을 한다'이렇게 되어 있지 요? 청원은 그냥 올려놓고 20만이 넘으면 답변하 는 것으로……

○김종민 위원 적정 숫자를 좀 연구해 가지고 그것을 같은 조항으로 넣으면 안 돼요? '의원 소 개 혹은 몇 인 이상 청원'.

○국회사무처입법차장 한공식 지금 현재도 청원 과 함께 진정이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것은 의 원 소개 없이 민원 형태로 국회에 제출할 수 있 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전자 시스템을 도입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금 법 상관없이 저희들이 제도를 만들려고 하고 있 으니까 그 제도하고 지금 법 규정하는 부분하고 하번.....

○김종민 위원 이게 전자가 있으면 가능하거든 요. 전자가 없을 때는 일반 오프라인 청원은 몇 인 이상은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가서 다 동의 를 받아야 되니까 그건 허들이 되는 건데. 전자 가 생기면 허들이 전자적으로 해결이 되는 거니 까 그 길도 열어 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소위원장 서영교 그러면 청원이 되려면 '몇만 이상'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김종민 위원 예.

○**국회사무처입법차장 한공식** 그러니까 의원님 소개 비슷한 일정 수 조건을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것은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다고……

○김종민 위원 그래서 동시에 병렬적으로 제한 하자는 거지요.

○소위원장 서영교 아니, 몇만이 안 돼도 청원 에 넣으면 청원으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김종민 위원 그건 의원 소개를 해야 되고. 일 정 요건이 안 되는, 숫자가 채워지지 않으면 의 원 소개를 통해서 해야 되고 일정 수가 채워지면 의원 소개 없어도 할 수 있는 제도를 길을 열어 주자는 거지요.

**○소위원장 서영교** 정유섭 위원님, 어떠십니까? ○정유섭 위원 저는 김종민 의원안, 아까 일정 한 숫자……

○소위원장 서영교 그러면 일정한 숫자를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는지를 또 이야기해야 되는 것 아 닙니까?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일 정한 수를……

○김종민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소위원장 서영교 그러면 의원 소개로 서면 제 출이 가능하고 또한 전자문서 제출 전자청원시스 템 같은 경우에는 전자시스템을 의원 소개 없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부분은 국회규칙으로 그 수 를 정한다, 이렇게 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설치, 이것은 지 금은 청원이 들어오면 각 소관위원회에 회부해서 청원을 받는 것이지요?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서영교 그러면 이 절차는 이렇게 가 는 것으로……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그런데 소위원회 활성화 해서 상설소위가 생기면 거기서 청원도 다 하게 되어 있고 그게 아주 정례적으로 자주 한다면 굳 이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상설소위에서 청원을 심 사하는 것으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서영교 그러니까 소관위원회 상설청 원소위에서 하면 된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그러 니까 지금 개정안을 할 것 없이 두면 된다는 말 씀이신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서영교 그러면 두 번째는 넘어가겠 습니다.

○정유섭 위원 그러니까 청원심사특별위원회는 설치하지 않는다?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예.

○윤재옥 위원 필요가 없지, 소위 상설화하면.

○소위원장 서영교 그다음 1차 연장 시 청원심 사소위 의결을 거친다, 매 회기 1회 이상 청원소 위를 개최한다, 이 내용은……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그런데 너무 그렇게 엄 격하게 절차를 규정하면 운영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청원들이 국회에서 처리하기가 어려운 것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청원심사소위가 그렇게 자주 열리지 못하고 있거 든요.

○이철희 위원 의결할 것 아니지요?

○소위원장 서영교 그러면 이것만 의결하지요.

○이철희 위원 이견이 있다잖아요.

○김종민 위원 아니, 아까 수정안으로는……

○**이철희 위원** 그것 말고도 있대요.

○김종민 위원 이견 있어요?

○정유섭 위원 청원실 설치하는 것 반대하는 거 예요.

○**이철희 위원** 그러면 다 됐어요? 청원특위 설 치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소위원장 서영교 청원특위 설치는 안 하는 것 으로 했고요.

○정유섭 위원 아니, 밑에 국회민원지원센터 말 고 청원실을 설치한다라고 별도의 조직을 또 만 들려고 하는 것 같아서……

**○소위원장 서영교** 그건 반대라는 말씀이시지 요?

○정유섭 위원 예.

○**국회사무처입법차장 한공식** 그건 안 하셔도 됩니다.

- ○이철희 위원 또?
- ○정유섭 위원 그것하고 아까 청원심사특별위원 회 설치하는 것하고……
- ○**이철희 위원** 그것 수용 안 하기로 했잖아요?
- ○정유섭 위원 그 2개예요.
-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심사절차에 있어서도 1차 연장 시 청원심사소위 의결을 거치고 매 회기 1회 이상 청원소위 개회 이것도 안 하시는 게······ ○소위원장 서영교 예.

("빼요」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너무 엄격합니다. 왜냐 하면 현행법도 최근에 됐는데……

(「뺍시다」하는 위원 있음)

- **○소위원장 서영교** 말씀 주시겠습니까?
- ○윤재옥 위원 법안 제출된 게 사실 현실하고 안 맞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수석이 말씀 하시는 것을 참고해서 정리하면 됩니다.
- ○소위원장 서영교 그러면 이 내용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맨 처음 청원제출 부분에서 전자청원시스템을 도입하는 이 내용을 이번에 변화시키는 안으로 개정안에 한다면 이것이 의미있게 합의할 수 있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 ○김종민 위원 그리고 청원실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전자청원을 우리가 열어 놓으면 사실은 온라인청원실이 필요한 거거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의미가 실제 구현은 돼요, 청원실 정신이.
- ○정유섭 위원 대통령 청와대에도 청원이 그렇게 많이 오는데 거기도 청원실 없는데 국회에는 청원실을 만들어요?
- ○국회사무처입법차장 한공식 지금 민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 ○정유섭 위원 민원센터에서 하면 되지요.
- ○윤재옥 위원 위원장님, 위원님들 일정이 다 바쁘신데 심사절차, 이송 및 처리절차, 청원 지지 서명, 청원폐기, 실무부서, 이 문제는 제가 보니 까 여기 위원님들이 다 동의하기 어려워요. 그러 니까 아까 전자청원 그 부분만 의결하시지요.
- ○소위원장 서영교 예.
-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그 부분하고 저희가 표에는 못 했는데 17페이지에 있는 청원의 불수리사항으로 '국가기밀에 관한 내용'은 추가하셔도될 것 같습니다.
- **○소위원장 서영교** 17쪽?
- ○**윤재옥 위원** 17페이지 보면 국가기밀 부분을 추가하는 거예요.

- ○소위원장 서영교 '국가기밀에 관한 내용 또는 재판에 간섭하거나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내용의 청원은 접수하지 아니한다.'이 부분을 포함하는 것으로.
-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예, 약간의 조문 정리는 있겠습니다마는 포함하시는 것으로.
- ○소위원장 서영교 예.
-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그리고 전자청원시스템을 도입하면 기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시행일을 약간 유예기간을 두시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윤재옥 위원 얼마 정도 하면 돼요?
-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공포 후 1년으로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소위원장 서영교 청원제도 개선까지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합의된 부분에 대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3항부터 제88항까지 국회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기 로 한 부분은 다음 회의에서 계속 심사하고 합의 된 부분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안건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채택하 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청원제도 개선 관련해서 청원제출 관련한 개정안, 의원의 소개로 서면 제출할 수 있고 또 전자문서로 제출하고 전자청원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하고 이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규칙으로만든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가기밀에 관한 내용 또는 재판에 간 섭하거나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내용의 청원은 접 수하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으로 의결하도록 하겠 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입법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35분 산회)

#### ○출석 위원(10인)

곽 상 도 김 종 민 박 경 미 서 영 교 성 일 종 신 동 근 유 의 동 윤 재 옥 이 철 희 정 유 섭

##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 석 전 문 위 원 승 기 김 입 법 심 의 관 장 지 원

# ○국회측 참석자

국회사무처입법차장 한 공 식